목 차

Ⅰ 운영계획 수립의 방향 • 1

Ⅱ 2019 전라북도 특수교육 핵심 과제 • 4

1장.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 4

1-1 특수교육기관 확충
1-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1-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5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1-6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7 장애학생 안전 강화

2장. 통합교육 환경 조성 • 24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2-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3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2-4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2-5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강화
2-6 각급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3장.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40

3-1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3-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4장.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 48

4-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4-2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4-3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4-4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4-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5장.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강화 • 75

5-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5-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5-3 특수교육대상학생 유아무상교육
5-4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5-5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 지원
5-6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Ⅲ 2019 부안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개요 • 87

Ⅳ 부안 특수교육현황 • 91

Ⅴ 부안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용 • 93

Ⅵ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점 사업 • 100

Ⅶ 2019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 103

Ⅰ. 운영계획 수립의 방향

1. 전북교육의 기본 방향

2. 부안교육의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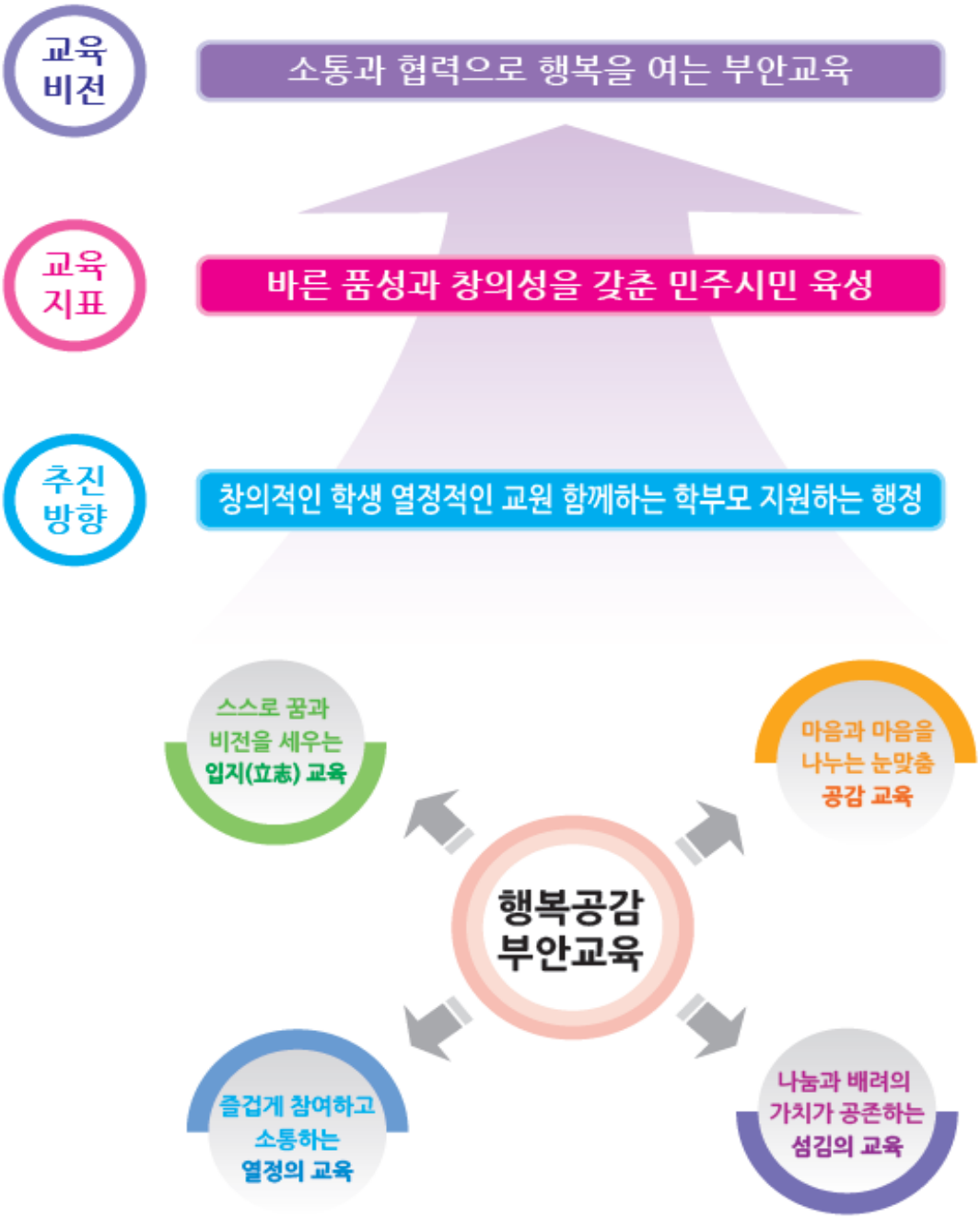
교육 비전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을 여는 부안교육
교육 지표
바른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추진 방향
창의적인 학생 열정적인 교원 함께하는 학부모 지원하는 행정
스스로 꿈과 비전을 세우는 입지(立志) 교육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눈맞춤 공감 교육
행복공감 부안교육
즐겁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정의 교육
나눔과 배려의 가치가 공존하는 섬김의 교육

3. 전북특수교육의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사회통합 실현

목표

-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강화
-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추진과제

- C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 D 통합교육환경 여건 조성
- E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F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
- G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Ⅱ. 2019 전라북도 특수교육 핵심 과제

1장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1-1 특수교육기관 확충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장애특성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권 보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정과제 51-2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추진

■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학급당 정원 수 준수 추진

- 1학급 학생 수 기준: 유(4명), 초(6명), 중(6명), 고(7명)
- 2018학년도 특수학급 29학급, 특수학교 15학급 총 44학급 신·증설
- 2019학년도 특수학급(특수학교 학급 포함) 신·증설 현황: 총 20학급 신·증설

■ 수요에 부합하는 특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장기 수용계획 수립을 통한 특수학급 신·증설

■ 일반학교 통합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문제 및 과밀학급 해소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거주지 인근에 배치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증설

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노력 지속

○ **전라북도 특수학급 자체 정원 기준**

연도	유	초	중	고	전공과
2016	4	8	10	11	12
2017	4	7	8	9	9
2018	4	6	6	7	9
2019	4	6	6	7	9

-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특수학급 학생 수 법정정원 준수를 목표로 했으나 앞당겨 2018년부터 학급당 법정정원을 맞추기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을 확대하였으며 2019학년도에도 신·증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

- 2018학년도 26학급 과밀학급 발생 요인

  입학 후 재배치(9), 여유 교실 부족(15), 3학급 규제(2), 26개

- 2019학년도 학생수 1명 특수학급 현황: 유(2), 초(26), 중(7) 34개

○ **연도별 특수학교(급) 신·증설 학급 수 현황**

연도	특 수 학 급				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계
	유	초	중	고		
2014	0	5	7	7	3	18
2015	5	11	3	3	2	23
2016	4	9	1	2	2	20
2017	2	6	3	3	14	28
2018	5	12	5	7	15	44
2019	**6**	**9**	**1**	**2**	**2**	**20**

- 소수의 과원학급은 계속 있었으며 2018년 44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2019년도에도 20학급 신·증설을 통해 법정정원을 준수하고자 함

다. 특성화된 특수학교 설립

■ 동부권(무주·진안·장수) 지역 특수학교 개교를 위한 타당성 검토와 TF팀 운영
- 전북 동부권 소외지역 중·고·전공과 과정 특수학교 개교 준비위원회 구성과 활동
- 2022년 3월 개교 목표로 특성화된 특수학교 개교 예정

라. 특수학급 신·증설 편성 관련 내용

■ 요건
-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 제외
-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소요 규모의 **정규 교실이 확보**된 학교일 것

■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
- 특수교육 학생수가 **3명 이상이고 3년 이상 유지가 가능**한 학교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3학급 이하**로 제한
- 인근학교 특수학급 신설로 과대화 방지
- 모든 일반학교에 1개 특수학급 신설 지향

❍ 특수학교도 본 계획에 의하되 교실과 특별실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지정·배치 등: 시·군을 달리한 학교배치는 지양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지정·배치는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설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2019학년도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학교 중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교육대상학생 1명의 특수학급 운영 지양
- 학생 수 1명 특수학급 소속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자체 점검

■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추진 일정
- 2019학년도 수용계획 수립(11월) 이전에 실시
- 특수교육대상유아일 경우 유아입학시스템(처음학교로) 등록 이전 실시
  ※ 유치원 유아 모집 시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우선 모집 대상임

■ 2019학년도 특수학교(급) 현황 ■

구 분			2019학년도 학교수	2019학년도 학급수	2019학년도 학생수	비고(신·증설)
일반학교		유치원	22	28	91	* 신설: 전주온샘유치원(1), 맑은샘유치원(4) 전주양현초병설(1), 남원노암초병설(1)
						* 폐급: 봉암초병설(1)
		초등학교	225	246	936	* 증설: 군산문화초(1), 이리동북초(1), 이리백제초(1) 이리부송초(1), 고창초(1)
						* 신설: 전주양현초(1), 전주화정초(1), 군산미룡초(1) 백암초(1), 수곡초(1), 봉남초(1), 동상초(1)
						* 감급: 함열초(1)
						* 폐급: 계화초(1)
		중학교	71	84	344	* 증설: 김제중(1), 완주중(1)
						* 신설: 이리남중(1)
						* 감급: 정읍여중(1), 남원하늘중(1)
		고등학교	38	61	330	* 증설: 없음
						* 신설: 한별고(1), 삼례공고(1)
						* 폐급: 없음
		소 계	**355**	**418**	**1,701**	* 증설: 7학급(초5, 중2,) * 신설: 17학급(유7, 초7, 중1, 고2) * 감급: 3학급(초1, 중2) * 폐급: 2학급(유1, 초1)
특수학교	공립	전주유화학교	1	14	56	* 증설: 1학급(유치1) * 감급: 1학급(영아1)
		전주선화학교	1	24	120	* 증설: 1학급(고1) * 감급: 1학급(중1)
		전주은화학교	1	32	201	* 증설: 1학급(전공과1) * 감급: 4학급(초1, 중1, 고2)
		군산명화학교	1	30	164	
		다솜학교	1	19	88	* 증설: 1학급(고1) * 감급: 2학급(중1, 전공과1)
		한울학교	1	18	80	* 감급: 1학급(중1)
		공립 계	**6**	**137**	**709**	* 증설: 4학급(유1, 고2, 전공과1) * 감급: 9학급(영1, 초1, 중4, 고2, 전공1)
	사립	동암차돌학교	1	20	98	
		전북맹아학교	1	18	89	* 증설: 2학급(유1, 전공과1)
		전북혜화학교	1	28	137	* 증설: 1학급(전공과1)
		전북푸른학교	1	22	129	* 증설: 3학급(초1, 중1, 전공과1) * 감급: 1학급(고1)
		사립 계	**4**	**88**	**453**	* 증설: 7학급(유1, 초1, 중1, 전공과3) * 감급: 1학급(고1)
	소 계		**10**	**225**	**1,162**	* 증설: 11학급(유2, 초2, 중1, 고2, 전공과4) * 감급: 10학급(영1, 초1, 중4, 고3, 전공과1)
합 계			**365**	**643**	**2,863**	* 증설: 35학급 * 감급: 15학급

1-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강화**

◎ **특수학교(급) 교원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대**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동법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향상)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지원단 확대 운영

■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 컨설팅 활동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특수교사, 통합학급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자문활동

- 구성영역: 수업지원, 생활지도, 전환교육, 통합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 인적구성: 특수교사, 통합학급교사, 자문인력(특수학교(급)관리자, 교수, 의사, 치료사), 협력위원(도·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 특수교육지원단 연간운영계획

순	절 차	시기	주관
1	특수교육지원단 구성원 안내	3월	도교육청
2	특수교육지원단 신청	3월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3	특수교육지원단 위촉 및 위원 연수	4월	도교육청
4	특수교육지원단 활동(컨설팅+워크숍)	4월~12월	해당학교
5	특수교육지원단 활동결과 평가	12월	도교육청

나. 특수교사 연구회(동아리) 조직·운영

■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사 연구회 조직 및 운영 활성화

■ 현장중심의 현안과제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다. 특수교사 경력별 연수 및 지원 실시 추진

■ 신규 또는 저경력교사 대상 특수교육지원단 컨설팅 및 행복동행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신규 또는 저경력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연 2회, 19,624천원)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의 처우개선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 부장교사 배치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등 권장

마.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강화

■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 교원상처치유 프로그램 이용방법 안내와 운영(교원인사과)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교육지원단 참여 독려**
- 해당영역에서 전문적인 지도 능력과 소양을 갖춘 특수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안내
- 특수교육지원단 신청과 활동으로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 **지역별 특수교사 연구회(동아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노력**

1-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추진내용

가.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지역·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와 특성을 살린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단위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특색 있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기본교육과정 교과군별 30% 범위, 공통교육과정 20% 범위 내에서 시수증감 가능

■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해당 교과로 편성하되,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음.

■ 전년도 단위학교 특색사업 및 교육활동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 일반학교와의 통합교육계획(수업교류, 행사교류 등) 수립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나.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편성·운영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시에 특수교육 운영계획 포함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성에 적합한 통합교육 운영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철저

■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지양: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 노력

■ 특수학급 학생 통합학급 적응 기간은 학교상황과 학생 장애 특성에 맞게 자율적 운영

다. 유·초·중·고 특수학급 자율선택 과제 운영

■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사회적응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 주제별 사제동행 프로그램 유형의 활동비 지원

■ 공모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선정(4월중)

■ 학급당 1,500천원 기준, 50학급 지원 예정

라. 특수교육대상 학생 위기상황 시 학습권 보호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서적 위기로 인한 유예 및 면제 지양

■ 정서문제(우울감, 감정조절 능력 저하, 공격적 행동 등)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 급증으로 인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서지원 시스템]

학생의 학업 중단 위험 사례 공유	⇨	관련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	학업 일반화 추수지도
(학교+교육청)		(Wee센터+지원단+교육청)		(관계기관 협의체)

* △정서적 지원 (상담의뢰) △ 학부모와 학교 컨설팅(특수교육지원단) △정책지원(교육청)

■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또는 정서안정실 마련 필요

■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교사와의 협력 강화

■ 통합학급 교수·학습 수업방법(협력교수 등) 개선을 위한 노력

마.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 지원 계획 포함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통합학급 수업참여 범위 결정

■ 일반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통합학급 교수·학습 활동 참여

■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교사와의 협력 강화

■ 통합학급 교수·학습 수업 방법(협력교수 등) 개선을 위한 노력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다운 학교' 운영 확대(3교→8교, 70,000천원)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전일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70학급, 70,000천원)

바. 통합학급 교사의 책무성 강화

■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배치 기준 준수 및 연수 이수 철저

- 통합학급 담임교사 배치: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대학원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공 중인 교사, 특수교육관련 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 통합학급 교사 대상으로 특수교육 이해 연수 (연 2회, 10,660천원)

사.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과 통합교육지원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 교육과정 조정, 교육 상담 등 교육활동 지원 강화

■ 통합학급 운영 시 학급정원 감축 조정 권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정원 1~3명 감축 필요

아.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학년 유의 운영

■ 2019학년도는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학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적용 학년에 유의하여 운영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적용 학년 】

구 분	적용 학년	특수교육 전문교과
2016학년도	유치원	
2017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	
2018학년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19학년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20학년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전문적 학습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협조 및 유의사항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용 중 2018학년도 시행 사항 반영

- 초등학교: 초등학교 5~6학년은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 중 학 교: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 고등학교: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전문교과 적용

■ 신규-경력 특수학급 교사 간 특수교육 컨설팅 활성화 노력

- 해당 지역에서 신규-경력 특수학급 교사 간 멘토-멘티 운영
- 특수교육지원단 적극 활용

■ 특수교육 대상학생 취(진)학 설명회 개최

- 시기: 2019. 6 ~ 10월 중
- 대상: 관내 취(진)학 예정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지역의 유·초·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실시

1-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추진목적 및 근거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특수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 추진내용

가.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 참여 및 충분한 안내와 의견 수렴 절차 준수
- 개별화교육지원 관련 부모교육 기회 제공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 포함
※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시, 그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

■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학생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구체적인 실행 연계성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 협조 및 유의사항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 참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 지원

■ 특수교사동아리 운영 지원과 우수사례 공유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 연수

■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에 관한 나이스 연수 실시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 계획 예시 자료 ■

<개별화교육계획>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및 개별화교육시작 및 종결 시기

이 름		개별화교육지원팀	1학기
생 년 월 일	년 월 일	팀장(교 감)	
학 년 반	학년 반	팀원(보 호 자)	
장애유형(등급)		팀원(진로담당)	
배치결과통지서 번호		팀원(일반교사)	
주 소		팀원(특수업무)	
		팀원(관련서비스)	
배치 유형	■ 일반학급 배치 □ 특수학급 배치		
1학기 개별화교육 시작 및 종결 시기	1학기	2019.03.00. ~ 2019.08.00.	

2.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1학기	
치료 지원	
방과후 활동 지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3. 현재 학습 수행 수준

현재학습 수행수준	내 용

4.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영 역	1학기
교육 목표	(예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모든 교육과정 활동에서 교육 목표·내용·방법 및 평가 계획의 수정 없이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함.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1-5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해 2차 장애 예방 및 발달촉진**

◎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로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력 향상**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동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동법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지원 강화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무교육 이행 철저

- 공립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배치
-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유치원 입학 희망 시 법적인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우선 입학

※ 2020년 유치원 입학유아는 처음학교로 입학시스템 실시 이전 선정·배치 완료 할 것

■ 영아학급 운영: 전주유화학교 3학급

- 대상: 만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 영아
- 지원내용: 개별화가족지원팀 구성 및 장애영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순회교육 지원

-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의 순회교육 지원(유치원 담당인력 6명)
- 특수교육대상영아 선정 시 필요한 교육지원 및 관련서비스 결정

■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공립 월 9만원, 사립 월 361천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만3~5세)

■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취학유예 및 면제 기준 강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예 및 면제는 반드시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예 및 면제는 법 제19조2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만 인정

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 장애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담당자 연수

■ 특수교육대상 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유치원/센터) 연수 실시: 연 3회
-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연 2회

다. 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부모상담 및 정보 공유 초등학교 방문 체험 등 초등학교 입학 전 및 입학 초기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전이 과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정보 공유 및 의견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 참고자료: 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가이드북
('경기도교육청(www.goe.go.kr)-통합자료실-특수교육과-과자료실' 탑재)

□ 협조 및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① **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의무교육 이행 안내**

- 관내 유관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과의 협력체제로 의무교육 이행 독려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하여 장애영아 무상교육 적극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 배치

② **선정 시 부모 상담을 통해 취학유예 및 면제 관련 정확한 안내**

- 취학유예 시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관리되며,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지원 보류
- 특수교육대상 유아 시·도교육청별 의무교육 지원 실태조사('19. 5월)

■ **특수학교(급)**

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령기 의무교육 이행 독려**

② **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과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간 정보공유 및 의견 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③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발달단계·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1-6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실현**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 추진내용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예술교육 강화 계획 구체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비장애학생과의 통합 참여 권장
- 문화예술거점기관 운영 내실화(4교, 4센터 운영)
  ※ 전주유화, 군산명화(2018), 전북푸른, 전북혜화(2018), 전주·임실특수교육지원센터, 군산·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2018)
- 「작은 음악회」 운영을 통한 거점기관 및 도내 장애예술인의 발표 기회 제공(연2회)

■ **문화·예술활동 체험기회 제공**

-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한 문화·예술활동 체험기회 제공
- 현장학습 등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나.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육교육 내실화**

-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배치

■ **특수학교 체육활동 지원(10교)**

-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장애유형과 학교 여건을 고려한 체육활동 지원
- 특수학교 1교 1종목 선정 및 운영

■ **특수학교 통합스포츠 운영 학교 지원(1교, 전북혜화)**

■ **특수학교(급) 교사 체육동아리 운영**

- 스포츠 재능반, 사제동행 체육동아리,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장애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체육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 장애·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통합스포츠 동아리 운영 지원

■ **장애학생 e-스포츠 운영 확대 지원**

- 장애학생 e-스포츠 교사 동아리 운영 확대(1개→2개)
- 장애학생 e-스포츠 운영을 위한 지원(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 **찾아가는 생활체육순회서비스 지원**

- 민간보조사업(1기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으로 운영

□ 협조 및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급)**

- 지역별 특색 있는 장애학생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체육 동아리 운영 지원
- 국립특수교육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 **특수학교(급)**

- 특수학교별 1종목 선정 및 운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장애학생 지원 사업 적극 활용

1-7 장애학생 안전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 교수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애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및 방과후 성폭력 피해예방

□ 추진내용

■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인력 배치·운영,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개선

■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 현장실태를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유형 및 정도, 주변 환경 등이 고려된 위험요소 등

※「119 다매체신고 서비스」활용 방법 교육 등 현장성 높은 교육 필요

- 재난 발생 시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 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 개선과 취약지역CCTV설치 확대·점검**

■ **특수학교 재난위험 시설 해소 및 소방시설 개선 지원(1교, 동암차돌학교)**

■ 학교주변 위험 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악취, 소음, 먼지 등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학교장 등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장 통합교육 환경 조성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추진내용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 운영
-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통합학급 프로그램 지원(70학급)**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학 등의 **통합교육 지원 인력풀 구축** 및 협력체 구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다운 학교' 운영 확대(3교→8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2018 운영사례 공유)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 (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3기관→ 6기관)**

- 익산맑은샘유치원(2019.3.1.개원) 특수학급 4학급 통합교육지원
-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치(37학급 예정)
- 유치원 특수학급 중증장애유아 배치 시 특수교육보조인력 우선 배치
- 특수교육대상 유아 정원 내 배치로 통합교육 환경 여건 개선

나. 특수·통합학급 교사 협력 강화

■ **특수·통합학급 교사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 유아 정보공유,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 **'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2017)', '장애영아 교육 및 장애유아 통합교육 우수사례집(교육부·전라북도교육청, 2017)',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국립특수교육원, 2018)' 적극 활용**

■ **특수·통합학급 교사 협력 강화를 연수 강화**

- 통합학급 담임(담당)교사를 위한 연수 실시: 연 2회(학기초)
- 통합학급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 (학급당 1,000천원 지원)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 특수교육대상 유아 정원 내 배치로 통합교육 환경 여건 개선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에 필요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인력 지원

■ 교육지원청별 또는 권역별 '특수교육지원단' 운영

2-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 추진내용

가.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내용 포함) 확대
- 일반학교 관리자(교장, 교감)는 매년 집합연수(워크숍) 3시간 이상 이수 실시
  ※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한 지표 반영 예정
-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연수과정에 참여 적극 권장
-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통합학급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나. 통합학급 교사 지원 강화

■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가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권장 및 우수 연구회 발굴
  ※ 교사연구회: 교과연구회, 개별화교육연구회, 행동지원 연구회, 통합교육 연구회 등

■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 실시**

- 자체연수(도교육청 주관, 연 2회) 및 위탁연수(국립특수교육원) 실시
- 전북교육연수원 주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과정 개설 운영 필요
  ※ 30시간 연수 과정 2개(단 2개의 연수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

□ 협조 및 유의사항

■ 일반학교 관리자가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과정(워크숍 포함) 안내

■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제공 확대 및 학년 초 장애이해 관련 워크숍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 관련 원격교육연수 과정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2-3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순회교육 지원 대상(특수교육법 제25조)**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 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영·유아 순회교육 제공

■ **운영방법**

- 2019학년도 순회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
-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능력·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 ①항)
-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은 이동거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의 판단으로 최대한 지원

나.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순회교육 담당자 연수 강화**

-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수 운영

■ **순회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선정**

- 이동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하여 선정
-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출석 권장

■ **순회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 실시**

□ 협조 및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순회교육대상자에 대한 관리 철저

: 소속 학교 담임교사 또는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수시 협의

: 재택 순회교육의 경우 순회교육대상자의 상황을 소속 학교에 수시 통보

- 순회교육 지원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수행 지원

■ **특수학교(급)**

- 특수학교: 순회교육대상자에 대한 관리 철저
-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순회교육 담당교사와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순회교육 대상자의 상황을 수시 확인

2019학년도 순회교육 운영 지침

Ⅰ 추진목적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지원

Ⅱ 법적근거

■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순회교육 운영 등)

Ⅲ 운영대상

■ 시설·재택 순회교육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육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Ⅳ 운영방침

■ 시설 및 재택 순회교육(이하 재택순회교육)과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육을 실시하되, 재택순회교육은 150일(최소 130일)수업일수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학교·급에 해당하는 자격소지자가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융통성 있게 운영

■ 재택순회교육의 경우, 학생 1인당 주 2회 이상 방문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1회 방문교육 시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학생의 장애유형·정도·능력에 따라 조정 가능

■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육의 경우, 학생 1인당 주1~2회 이상 방문교육 또는 학생의 장애유형·정도·능력에 따라 조정 가능

■ 수업시간은 1시간 기준 유치원 30분, 초등학생 40분, 중학생 45분, 고등학생 50분으로 운영하되, 학생의 장애유형·정도·능력·기후·학습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작성한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순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순회교육계획은 소속 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와 순회교사가 협의하여 작성

■ 순회교육계획 시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담임교사와의 연 2회 이상 상담시간 필수 운영

■ 순회교육 근무상황부와 순회교육 일지 작성을 통한 순회교육의 전반적 관리

■ 순회교육 신청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비 장소 제공 필수

V 순회교육 운영

1. 순회교육 대상학생 선정 방법

■ 선정 방법: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 절차(예)

기간	내 용	주체
3월 1~3주	순회교육 신청	학부모, 해당학교
3월 3~4주	대상자 심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3월 4~5주	선정 결과 통보 및 순회교육 실시	순회교사

※ 1년 단위로 신청 받음

2. 순회교육계획 구성요소

■ 순회교육 대상학생 현황 및 담당교사

구분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명	장애영역	담임교사	순회교사	비고
재택	시설	통합학급							
	○		00초등학교	2-1	이00	자폐성장애	김00	이00	

■ 순회교육 일정

학생명	홍길동	순회교육 장소	재택	순회교사	신OO
월	화	수	목	금	비고
방문교육 【2시간】	과제학습 【2시간】	방문교육 【2시간】	과제학습 【2시간】	방문교육 【2시간】	

※ 순회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음

■ 개별화교육계획

- 소속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작성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첨부
- 개별화교육계획은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 소속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와 순회교사의 협의 하에 수시로 수정하여 순회교육에 반영

■ 순회교육 평가

-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
- 순회교사가 학기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소속 학교로 평가 결과를 보고함(연 2회)
-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를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순회교육 중단

■ 시기: 수시로 가능

■ 대상: 순회교육 대상학생 중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소 신청을 한 학생

■ 순회교육 중단 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와 담당교사 간의 사전 협의

⇒ 순회교육 대상학생 보호자 순회교육 취소 신청서 받기(신청학교)

⇒ 순회교육 취소 신청 공문 보내기(신청학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특수교육지원센터)

⇒ 결과 통보하기(특수교육지원센터)

4. 재택 순회교육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근거하여 작성함

2-4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추진목적 및 근거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 지원의 다양화**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2조(개별화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추진내용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나.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특수교육지원단 내 팀 구성·운영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

■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구성

■ 학교가 의료기관, 대학,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계망 구축

■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와 협력,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

※ 심각한 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위기관리계획 수립

라.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지원

■ 긍정적 행동지원을 연수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운영비 지원

□ 협조 및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제공

■ **특수학교(급)**

- 단위 학교는 교과교육 외에 의학적 상담, 치료지원, 가족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심리·물리적 상태에 대한 지속 점검 실시

2-5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정단한 편의제공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추진내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교육현장의 수요조사 후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담당교사가 보조공학기기를 교수·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 강화
-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장애 영역별 특성화센터에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운영: 각종 대여 장부 및 신청서 구비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운영 매뉴얼(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2017)' 적극 활용

-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4개소)
  - 지원 범위 및 영역: 4개 영역, 14개 시 군 대상

센 터 명	설치 장소	비고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청각장애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거점지원센터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북맹아학교	시각장애

■ **보조공학기기 지원 절차**

준비 단계		계획 단계		지원 단계		평가 단계
• 유관기관 인프라 구축 •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	• 수요조사 분석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 및 확보	▶	• 보조공학기기 대여 • 사용점검 및 A/S 관리 • 보조공학 활용연수	▶	• 수요자 만족도 • 관리실태 점검 • 결과분석 환류

■ **특수학교·일반학교 재학 특수교육학생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시각장애학생 대체 교과서(확대·점자·음성교과서) 보급 지원
- 특수학교· 일반학교 재학 특수교육학생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유지 관리비 지원
  · 학교별 수요 신청 취합 후, 선정 심사하여 지원

□ 협조 및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② 보조공학기기 대여 후 사용점검 및 관리 철저

③ 보조공학기기의 유지·보수 철저

■ **특수학교(급)**

①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지원

② 보조공학기기 대여 후 사용점검 및 관리 철저

2-6 각급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각급학교의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이하 장애인 등 편의시설)

□ 추진내용

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 **도내 모든 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예산 확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재배정 사업) 확충을 위한 연차적 재원확보 노력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 기관 확대에 따른 홍보 확대, 예산확보 및 이행 철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의무기관 및 내용

※ (벌칙조항)동법 제49조: 차별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모니터링 실시

■ **편의시설 관련 규정 안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2018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 결과: **전북 94%**
-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적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립 및 설치 점검 강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다운로드: 도교육청-교육혁신과-부서자료실)**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이행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18년 장애인 학교(급)별 편의시설 설치율>

2018. 12. 31.기준 (단위: 교)

구분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설치율 평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차이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핸드레일	점자 블록	유도 안내설비	경보 피난시설	
유	520	465	501	432	450	450	452	328	420				**84.1**
초	417	411	414	407	408	397	404	402	401	403	413	403	**97.3**
중	209	195	207	206	199	184	188	200	196	195	203	202	**94.6**
고	131	123	129	128	123	118	107	124	122	128	127	126	**94.0**
특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0**
계	1,287	1,204	1,261	1,183	1,190	1,159	1,161	1,064	1,149	736	753	741	
설치율		**93.5**	**98.0**	**91.9**	**92.5**	**90.1**	**90.2**	**82.7**	**89.3**	**96.0**	**98.2**	**96.5**	**94**

※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전북 94%

- 설치율: 77.6%('14) ⇒ 81.7%('15) ⇒ 89.0%('16) ⇒ 91.6%('17) ⇒ 94%('18)

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노력

■ 단위학교: 3개 의무 항목(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소변기 핸드레일) 자체 예산 적극 확보

■ 도교육청: 주출입구 접근로, 화장실 소변기, 승강기 등 94교 지원 예정

□ 협조 및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적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 모니터링 실시 및 집행부서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 **학교(급)**

- 자체예산으로 설치토록 한 의무시설(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소변기 핸드레일) 예산 확보

※ 관련: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및 예산 확보요청(교육혁신과-27344, 2018.12.12.) 「2019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2019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 예산의 조기집행 및 다른 시설사업과의 연계집행을 위해 2019. 1월 중 예산 재배정
- 관리자 연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교육 강화

(제공내용) 정당한 편의제공 세부사항

영 역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세부내용
교 육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ㅇ 교육보조인력 배치	ㅇ 교육보조인력 배치(필요시)
	ㅇ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ㅇ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 대여
	ㅇ 보조견·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ㅇ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ㅇ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ㅇ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등
	ㅇ 교육과정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ㅇ 교육과정 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ㅇ 그 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ㅇ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 자료 등
		ㅇ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
		ㅇ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정보접근·의사소통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	ㅇ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제공	ㅇ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ㅇ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보청기기,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ㅇ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자막,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ㅇ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3장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3-1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 추진목적 및 근거

◎ **학생참여 및 활동 중심의 수업과 평가 방법 개선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혁신** ◎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설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의 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의 2(자유학기 활동)

□ 추진내용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및 확대 운영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 특수학교의 여건, 장애유형 및 정도,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교수준 교육과정 재구성

■ 특수학교 자유학기 확대를 희망하는 학교는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 일반학기 연계,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기) 등 활용

■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전면시행**

■ 단위학교 교원 연수, 학부모 지원단 운영,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한 교실 수업 및 자유학기 활동 지원

나. 2019 호남권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청으로서의 역할 수행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 **2019 호남권 자유학기제 워크숍과 성과보고회 개최**

- 2019 호남권 자유학기제 워크숍 운영: 2019.2.14.(목) ~ 2.15.(금)

- 2019 호남권 자유학기제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2019년 12월중
-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유학기 운영 자료집 개발과 발간(연중)

다.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

■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즐거운 교실수업 개선

■ 학교별 여건에 따른 교과협의회, 교사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구성 지원

■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단계별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권역별 워크숍,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원격 연수, 수업콘서트, 성과보고회 등 참여**

** 국어·사회, 수학·과학, 안전생활, 경제생활, 직업·자립생활, 예술·체육 등 학생 워크북 및 교사용 지도서 적극 활용

라.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 '꿈길' 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및 진로체험처 점검·활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 학교에서 발굴한 체험처를 '꿈길'에 등록하고, 장애맞춤 체험처는 지속적으로 발굴·등록**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모니터링 및 학교 주관 체험처 활용 결과의 누적·통계 관리로 현장 업무부담 경감 및 질 관리 효율화

마.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 특수학교별 여건에 따라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 지원

■ 교육청 및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진로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 꿈길, 학교 내 자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진로멘토링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진로체험센터 등과 협업체계 구축하여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협력 확대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안전한 체험처 활용

■ '진로체험인증제' 인증기관 확대 및 학교의 체험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등을 통해 체험의 질적 개선 도모

■ 체험활동 사전-운영-사후 단계별 점검을 통해 안전성 제고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및 체험학습운영 지원 자료집(전북교육 2017-636) 활용

□ 협조 및 유의사항

■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을 통한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

■ 체험학습 전 사전 교육, 안전사고 예방 교육, 사고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한 체험활동 대책 수립

■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진로체험센터 등과 유기적 협력하여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학습 운영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및 체험학습 운영 지원 자료 적극 활용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원격 및 집합연수 등 연수 참여

3-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직무역량 강화 및 진로의 다양화 도모**
◎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한 학교에서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전환**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도입을 통한 진로인식 및 탐색 기능 강화

■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실습, 고용지원 등을 위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전공과 설치 확대 및 자립생활훈련·직업재활훈련 제공을 위한 운영 형태 다양화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교 내 진로탐색기능 강화 및 교과·진로 융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직업 교육실 환경 조성 등 전문화 지원

■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진로 직업교육 효과성 확대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진로·직업 교육 역량 강화

나.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지역사회중심에서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 활성화

-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 구성·운영

-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협력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 전문기관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직업교육 지원 (무주, 진안, 장수 지역 지원 예정)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보호 및 특수교육(진로 및 직업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방식 전환

- 직업평가 등을 통해 학생의 적성, 흥미, 요구 등에 맞는 직무 분야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관계부처(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여 안정된 현장실습 및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 학교 내 일자리사업, 대학 및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등

- 현장실습 참여 기간 3주 이상, 학교에서 산업체로 직접 현장실습 참여하는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채용 시기 탄력적 조정

-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우수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허용

  *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 확보,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 선정한 산업체 등

- 정부(지자체) 및 장애학생 전문 취업지원 공공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 허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 **현장실습 전**

- 학생들의 자기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실습처에는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이해교육, 장애인 차별금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등 강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 교원 및 현장실습 지원인력들에 대한 연수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역량 및 책임성 강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연수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학생노동인권 보호 관련 교육자료 및 콘텐츠 활용

○ **현장실습 중**

- 교원의 임장지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직무지도원 배치를 확대하여 인권침해 등을 사전 예방

- 유관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현장실습 지원 및 컨설팅 강화

○ **현장실습 후**

- 현장실습 보고회(평가회)를 통해 학생만족도, 권익침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시 인권보호체계 확립

라.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지원 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 지역사회 내 일자리 수요가 있는 산업체 현장에서 장애인 취업을 목표로 한국장애인개발원(직업재활 전문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위탁교육 확대

* 장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설계컨설팅,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산업체 단기견학.체험, 일배움 프로그램 등 운영

- 학교 내 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마.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지원 확대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의무 배치를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18.7.3.)

-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상담' 전문 자격을 갖춘 진로전담교사 배치

- '20년 3월부터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각 1명씩 의무 배치

■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 추진('18.12.~'19.8.)

- '18년 최초 연수 운영비에 한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직무, 역할, 운영 및 역량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방안 연구' 및 전문성 향상 워크숍 추진 예정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학교기업과 거점학교 현장 점검 및 운영 실적 평가 실시

■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개인별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성과관리

- 취업률 외에 다양한 개인별 성과지표를 활용한 성과관리 후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에 반영

■ 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졸업 후 최소 3년까지 사후관리 실시

- 취업자에 대한 적응지도, 상담, 취업유지 여부 확인 등 장기적인 고용 안정 관리

사. 특수학교 전공과과정 운영 내실화

■ 목적: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직업 기능과 사회적응력을 신장시켜 직업인으로서 잠재력 계발

■ 내실화 계획

- 전공과 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대상 진로직업 연수 추진
- 전공과 과정 신·증설은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통해 추진

■ 2019학년도 전공과 운영 학교 및 학급 수

순	구분	학교명	학년별 학급 수		비 고
			1년	2년	
1	공립	전주선화학교	3	3	
2	공립	전주은화학교	4	4	
3	공립	군산명화학교	2	2	
4	공립	다솜학교	1	1	
5	공립	한울학교	1	1	
6	사립	전북맹아학교	1	1	중도실명자 대상
			1	1	시각장애 대상
7	사립	전북푸른학교	1	1	
8	사립	전북혜화학교	1	0	
계	**8교**		**29학급**		***학급당 정원 9명**

※ 전공과 교육과정은 전라북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름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운영 내실화

■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권장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시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한 추진 방안 마련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현황 제출(2019년 12월)

4장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4-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정과제 51-2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지역	센터명	설치장소	연락처
전주	전북	도교육청	239-3358
전주	전주	전주초등학교	276-6056
전주	전주진로직업	전주초등학교	273-9373
군산	군산	군산교육지원청	466-2543
군산	군산진로직업	군산교육지원청	471-2547
익산	익산	(구)익산교육지원청	831-8681
익산	익산진로직업	(구)익산교육지원청	831-0180
정읍	정읍	정읍교육지원청	530-3085
남원	남원	남원교육지원청	620-7881
김제	김제	김제교육지원청	540-2592
완주	완주	완주교육지원청	270-7628
진안	진안	진안교육지원청	430-6287
무주	무주	무주교육지원청	320-5136
장수	장수	장수교육지원청	350-5286
임실	임실	임실교육지원청	640-3519
순창	순창	순창교육지원청	650-6311
고창	고창	고창교육지원청	560-1678
부안	부안	부안교육지원청	580-7419

※ 직업전환중심에서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운영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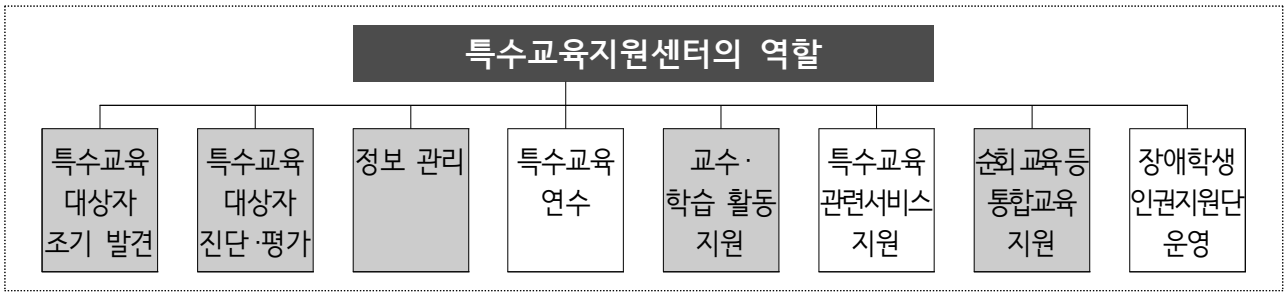

※ 2019. 교육부특수교육운영계획에서 발췌함

다. 전라북도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 체계

■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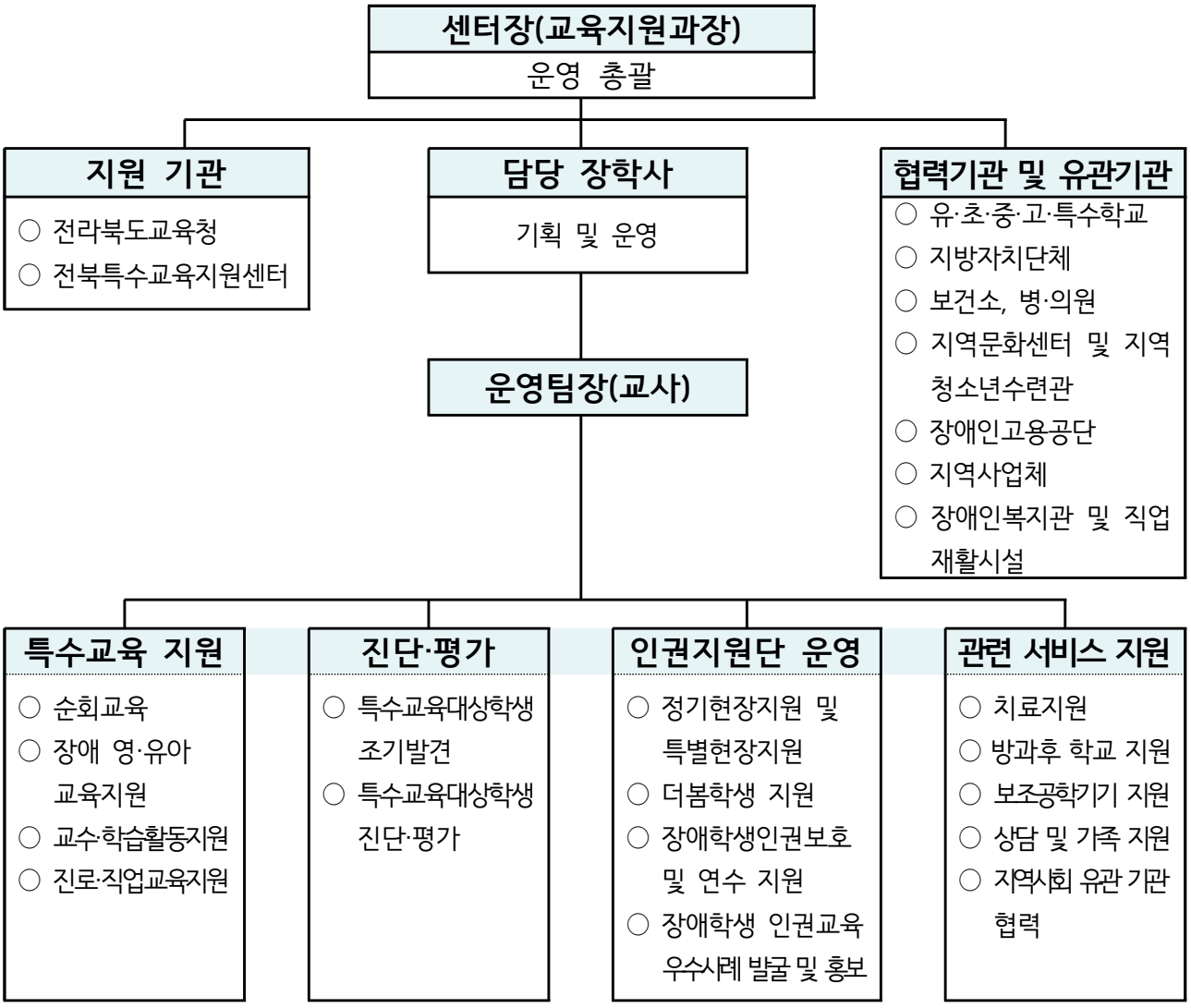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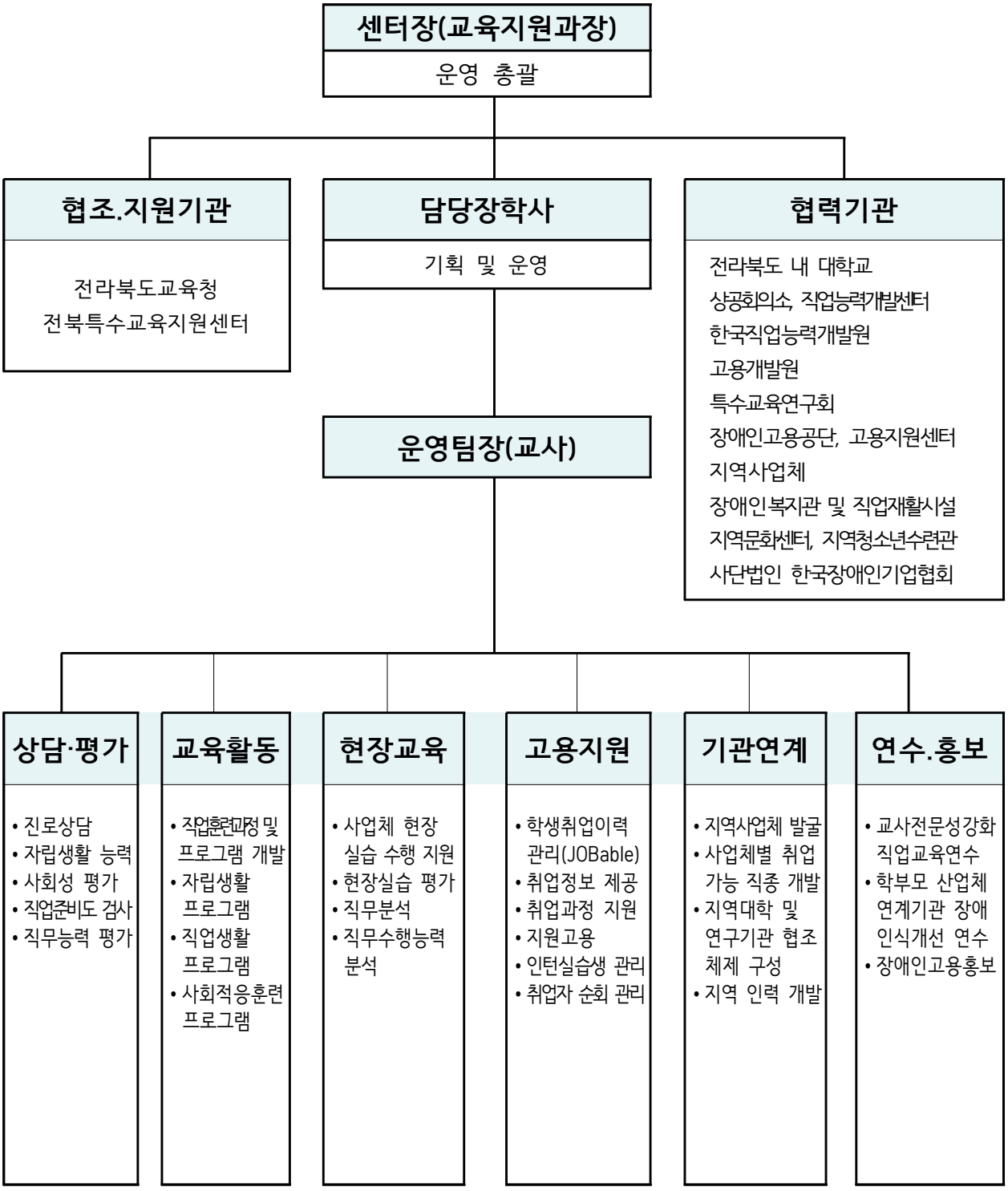

■ 2019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정 현황(예정)

센 터 명	교사								교사 계	센터 강사					총계
	정규				정원 외 기간제										
	유	초	중	소계	유	초	중	소계		유	초	중	기타	소계	
전북교육청			1	1			1	1	2					0	2
전주	1	2		3		1	1	2	5	1		1		2	7
전주진로직업			2	2			2	2	4					0	4
군산		1		1			1	1	2	1	1			2	4
군산진로직업			2	2			2	2	4					0	4
익산	1	2		3				0	3			1		1	4
익산진로직업			2	2			2	2	4					0	4
정읍		1	1	2				0	2	1			1	2	4
남원		2		2			2	2	4					0	4
김제		1	1	2	1			1	3		1			1	4
완주		1	1	2				0	2	1	1			2	4
진안		1	1	2				0	2		1			1	3
무주		1	1	2				0	2		1			1	3
장수		1	1	2	1			1	3					0	3
임실		1	1	2				0	2		1			1	3
순창		1	1	2	1			1	3					0	3
고창		1	1	2				0	2				1	1	3
부안		1	1	2	1			1	3					0	3
총 계	2	16	16	36	3	1	11	16	52	4	6	2	1	14	66

라. 전라북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추진 계획

■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체계 확립

-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사회 변화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의 확대 및 특수교육력 제고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상담, 장애 영·유아교육, 교수·학습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직업교육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영역을 지원하여 특수교육지원의 전문성, 다양화를 도모하는 특수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특수교육지원센터 독립성 확보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별도 운영 조직
  - 지역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예: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진단·평가업무) 센터 고유의 업무 수행

구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요 역할	- 특수교육 주요업무 계획 수립.추진 - 특수교육 컨설팅 관련 업무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선정·배치) - 특수교육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등 각종 통계 - 기타 특수교육 행정 지원 등 - 관련서비스 행정 업무 (보조인력 관리 및 배치, 치료지원, 방과후, 통학비 지원 업무 등 행정적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 진단·평가 및 선별검사 지원 - 순회교육 - 지역 특수학급 교수·학습활동지원 -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원 - 인권보호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 관련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치료 프로그램 관리,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사항 등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1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본 운영 지침, 예산 및 인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총괄하도록 함

- 지역교육지원청은 센터장(교육지원과장)을 중심으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담인력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전반적 운영 관리를 하도록 함

-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전담인력의 순회교육 및 기타 복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운영모니터링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사례 공유

- 분기별 운영모니터링 협의회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정책공유 및 정보 제공
- 지역별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특수교육지원센터 환경 개선 지속적 추진

- 2019년 진안, 임실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

- 2020년 장수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계획
  ※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2020년 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른 이전 예정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성화 및 협력 운영체계 구축

-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을 통한 협력 운영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상호간의 업무 지원 및 사안 공동 대처를 통한 지원센터 안정화 도모
  - 군지역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협력운영체계 구축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3개소: 전주, 군산, 익산)
  -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대상의 진로직업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
    ① 전주권역: 임실, 장수, 순창, 남원
    ② 군산권역: 김제, 부안, 정읍, 고창
    ③ 익산권역: 완주, 진안, 무주
  - 권역별 운영지원 업무
    ① 장애학생 직업관련 평가 지원(담당인력 및 평가도구 지원)
    ②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직업관련 연수 지원
    ③ 직업전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시설 이용 및 직업 프로그램 체험

-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4개소)
  - 감각장애 특성화센터를 5차 5개년 운영방향에 의거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로 전환운영
  - 지원 범위 및 영역: 4개 영역, 14개 시 군 대상

센 터 명	설치 장소	비고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청각장애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거점지원센터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북맹아학교	시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별 운영 지침

1. 순회교육 지원 내실화

■ 지원대상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지원대상자 선정

- 순회교육대상자는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장애정도,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가급적 학교에 출석토록 권장**

■ 지원방법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가 순회교육을 전담하는 것을 지양하고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사와 협의하여 순회교육계획(수업내용, 수업일수, 시간표 등 포함)을 수립하여 협력 지원**
- 주 2회 이상 방문수업을 원칙으로 함(150일 수업일수 확보), 방문교육, 체험학습, 과제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2.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

■ 지역별 진단·평가 위원회 구성

- 특수교사, 치료사 등 진단.평가 전문가로 구성
- 수시, 정기 진단·평가 체계 구축
- 의뢰 학생의 지능, 학습수준, 행동 특성 등 학생의 교육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직업교육, 순회교육, 치료지원 및 관련서비스 지원 여부 등 기재
- 진단·평가 결과 누적관리
- **진단·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교 배치(통합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에 대한 상담 실시**

■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실시**

- 진단·평가 위원회 위원 사전연수
- 검사도구 활용 및 결과 분석, 진단.평가 보고서 및 결과서 작성요령 등 연수 실시

3. 통합교육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은 기존의 개별수업지원 중심에서 통합교육지원내용을 중심으로 내실화 운영
- 지원내용: 일반학교 통합교육계획 수립 지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지원, 통합학급 교사에게 특수교육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 자료 지원, 문제행동 지도 및 생활지도 지원, 특수교육 관련 상담 기타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전반적인 사항
- 지역별로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지원**

-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향
- 지역교육지원청의 장애인식 개선 사업과 이중·중복 지원 지양

■ **통합교육 관련 연수 및 동아리 운영 지원**

- 지역 내 통합학급 교사, 관리자 대상 연수 실시
- 통합교육 연구회 및 동아리 운영 지원을 통해 통합교육 관련 연구 분위기 조성, 다양한 자료 개발·보급

4. 교수·학습활동지원 활성화

■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 체육 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교과지원 등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영역 선택
- 센터 내방 및 외부 프로그램 운영(외부 프로그램 이용 시 지역 내 유관기관 적극 이용)
- 지역별 학생 수요, 센터 전담 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개설 프로그램, 운영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방학 중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운영

- 특수학교(급)의 계절제 방과후 프로그램과 이중·중복지원 지양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방학 프로그램은 특수학교(급)의 특기·적성 위주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고, 운영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

- 프로그램 운영 예시
  • 주제에 따라 직업교육, 치료, 기초학습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 형제자매,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과 통합 지원
  ※ 1회성, 낭비성 체험 중심의 운영은 지양하고, 주제를 설정하여 연계성 있는 운영

■ **교육활동자료 개발 및 보급**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특수교육 활동자료 개발 및 보급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교육자료 공유 및 보급 활성화

5. 일반학교 대상 진로·직업교육지원

■ **일반학교 중·고등학생 대상 직업평가**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직업평가 지원

■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권역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체험활동 협력 운영

- 지역 내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프로그램 영역 선정
  ※ 센터 내부 또는 외부 위탁형태의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특수학교, 직업거점학교, 산업체와 연계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단위학교간의 정보 공유 및 프로그램 협의를 통해 전체 운영에 관련한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장애 영·유아교육지원 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 연계한 조기발견 및 선별검사 지원체계 구축, 유치원 의무교육 홍보

-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지원 실시: 가정방문 및 보육시설 방문,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조기중재 체제 구축

- 장애 영·유아의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발육정보, 신변처리기술, 의사소통기술, 운동능력발달, 치료지원, 수술이나 재활에 대한 정보, 보조공학지원 등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장애 영·유아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 언어치료 등 전문적인 연수 실시
- 장애 영·유아거점센터(2개소) 장애영유아 지원 홍보 및 교육지원 사례 개발 및 공유
- **유아특수자격소지자가 배치된 지역**의 경우 **'장애 영·유아 지원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조기발견 및 적극적인 중재체계 구축

7.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가족지원

- 상담, 부모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 부모동아리 1개 이상 반드시 운영(지역과 연계 가능 또는 자격증반 운영 적극 권장함)
- 부모교육의 경우 1회성 연수 지양, 계획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족캠프(연 1회 이상)는 특수교육 관련 정보제공, 자녀 양육 및 진로지도 방안, 집단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

■ 보조공학 기기 및 교재·교구 대여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공문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장애유형별 거점 센터 이용한 지원
- 지역 유관기관 지원 적극 안내

8.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강화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 센터장,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 특수학교(급) 교장(감),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를 필수 인원으로 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
  ※ 필수 포함인력 외 센터별로 필요에 따라 전문가 추가로 포함 가능

■ **주요역할**

- 장애학생 대상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이해 활동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부모 또는 장애학생 교육 시 관련 주제를 포함하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분야별 전문가 강사 활용 등

- **장애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장애학생의 자기관리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 개발 등 교육 강화

-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 현장지원 기능** 수행

- 장애학생 대상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체제 확립

- 매월 1회 지역내 학교(특수학교, 일반학교)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정기 현장지원 실시
  ※ 학부모와 지역사회 내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유기적 연계 및 협력
  ※ 학기별, 분기별 대상 장애학생 상시 현장지원 결과 누적 관리

-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장애학생 피해 최소화
  ※ 상황발생 시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관내 관할기관 및 Wee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학생 피해 최소화와 인권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침

1. 운영 모형

■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스템 모형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 개별화 전환교육 계획(ITP) 수립 → 교육과정 중심 직업훈련 → 집중적 직업훈련 → 학습중심 현장실습 → 취업지원 사후관리

2. 학생지원 사업

■ 진로 상담 및 직업평가

- 지원내용: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학생기초자료 구축
- 운영방법
  - 학생의 장애정도, 직무능력 파악하여 적절한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실시
  - 유관기관인 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장애인개발원 등과 연계하여 진행

■ 개별화전환교육계획(ITP) 수립

- 지원 내용
  - 학생 진로·직업 전환을 위한 개별화전환교육계획(ITP) 작성
  - 일반학교 교사 대상 개별화전환교육계획(ITP) 수립 지원 및 연수
- 운영 방법
  - 개별화전환교육지원팀 구성

  ※ 특수학급

  ① 구성: 학교 개별화교육위원회 등

  ② 운영: 학교 개별화교육위원회 소집 시 센터에서 순회 지원

  ※ 일반학급

  ① 구성: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학부모, 학교 담임 등

  ② 운영: 센터 내방 후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실시 후 작성
  - 개별화전환교육계획(ITP)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 프로그램 참여 협조 및 지원
  - 개별화전환교육계획(ITP)에 따른 직업·전환교육 운영 내용 평가 및 계획 수정

■ **교육과정 중심 직업훈련**

- 운영 횟수: 센터 프로그램별 계획에 의함

- 지원 내용
  - 직업의식 및 태도
  -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형성 기술
  - 자기관리 능력 및 자기결정 능력 기술
  - 다양한 직종 탐색
  -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

- 운영방법
  - 일반학교(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교육과정 및 학교일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시간 운영
  - 직무수행능력 부족 학생은 연령에 상관없이 다면적 훈련 프로그램(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 적용,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학생은 집중적 직업훈련 단계 진행

■ **집중적 직업훈련**

- 대상: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운영횟수: 센터 프로그램 별 계획에 의함

- 지원 내용(예시)
  - 서비스반: 바리스타, 세차, 세탁, 진료보조 등
  - 제조반: 조립·포장, 센터 자체 홍보물품 제조 등
  - 농·축산반: 원예, 축산, 친환경 농업 등
  - 식품가공반: 미숫가루, 과일즙, 구운 소금, 발효된장, 청국장 제조 등
  - 컴퓨터반: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문서작업, 웹디자인 등

- 운영 방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장애영역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교육과정 및 학교일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시간 운영
  -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각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특색 있게 운영가능

■ **학습중심 현장실습**

- 대상: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 내용
  -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하고 취업 약정 또는 취업이 연계된 현장실습 산업체 및 직업재활 시설 중심으로 실시
  -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협조
- 운영 방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성과 직무능력을 고려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맞춤형 현장실습 실시(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사회적기업 등)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인력 활용 순회 방문을 통한 현장 실습 지원 및 관리
  - 출퇴근 시간 준수 및 복장, 태도, 임금관리 등 전체적인 지도 및 관리

■ **취업지원 및 추수지도**

- 대상: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 내용
  - 취업 지원 및 직업교육 위탁, 취업 학생 순회 관리
  - 일자리 참여 시기는 동계 방학 (1월) 이후로 유도
- 운영방법
  - 지역 내 장애인 고용 사업 참여 및 활용
  - 장애학생 취업 기관 정기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직장 적응력 파악 및 재교육 필요성 여부 결정
  -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근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사업체와 협의하여 운영

3. 교사 및 학부모 지원 사업

■ **교사 지원**

- 직업교육 실무능력 관련 연수 실시
- 직업전환교육지원계획(ITP) 수립 관련 연수 및 자문 실시
- 교사 직업전환교육 연구회 육성지원
- 직업전환교육 관련 자료 배부
- 산업체 및 선진지 견학

■ **학부모 지원**

- 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 장애학생 진학 및 취업 정보 제공
- 직업전환교육 관련 자료 배부
- 산업체 및 선진지 견학

4. 지역사회 연계 사업

■ **지원 내용**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
- 장애학생 고용 홍보

■ **운영방법**

- 직업전환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인력이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및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내 장애학생 고용 홍보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

5. 방학 중 전환교육 프로그램

■ **대상**

- 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 내용**

- 지역사회 내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직업의식 및 태도 함양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운영

■ **운영방법**

- 일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운영
- 장소: 해당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실습 산업체
- 장애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예방교육 및 안전지도 실시
- 대상학생 인원 및 운영방법은 지역 직업전환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 협조 및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서 제출(2019.2.26.까지)**
- **지역 내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등 교원 자원 활용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Wee 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 순회교육 제공, 진단 평가, 상담 및 각종 특수교육 지원 계획 수립과 관리 철저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및 현장 점검 철저**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4-2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추진목적 및 근거

◎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및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추진내용

가.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15개 교육청, 105,000천원)

■ **장애 체험 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교별 소속 장애학생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인권교육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대한민국 1교시: KBS라디오, 장애이해교육드라마: KBS2TV) 수업 실시 확대

■ **교과서의 사회적 약자 관련 부분**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이해 내용 지도자료 활용

■ **장애인식 개선 행사 개최**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연 2회, 도교육청 주최 1층 입구)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하루장터 개최(연 1회, 장소미정)
- 교육지원청별로 계획 수립하여 다양한 예술행사 개최(14개 교육지원청)
- 장애이해교육 우수사례 및 백일장, 홍보 동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참여 유도

- 장애학생 사진작품과 홍보용 포스터 전시회 개최 (연 2회)
- 행사 후 설문조사 및 감상문 작성을 실시하여 참가자의 장애인식 변화 조사

■ **장애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추진**

- 특수학교별로 창의적인 장애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학교와 공동 활동함으로써 모든 일반학생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개선 도모
- 지역별 장애인식개선 사업 추진하는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 일반학교·특수학교·장애인시설 자매결연 권장

■ **각급학교·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 기관별 직장교육 연간계획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일정 포함
- 전문강사(장애인 당사자 포함), 교육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 실시

다.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유·초·중등학생 및 일반인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홍보 콘텐츠 활용**

■ **장애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콘텐츠 활용 방안 마련**

□ 협조 및 유의사항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인식개선 사업 계획 수립
- 유·초·중·고등학교 대상 연 2회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대상 연 1회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 지역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 **특수학교(급)**

- 장애이해 교육 철저
- 학생 대상 연 2회 장애이해 교육 실시
- 교직원 대상 연 1회 장애이해 교육 실시

4-3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장애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자기보호 능력 신장을 위한 인권 및 성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설치·운영**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센터장,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 특수학교(급) 교장(감),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를 필수 인원으로 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
- 내용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3월 초
  - 협의회 개최: 연 2회 이상 협의회 개최
  - 현장지원: 매월 최소 1회 이상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현장 직접 방문 점검
  -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 및 장애학생 및 교사 표집 면담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 지원내용: 장애학생 인권보호, 학교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미담사례 등
  - 결과보고: 지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현장지원 결과를 매월 30일까지 전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취합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보고)

■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조력 기능 포함

나.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일반학교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장애인 인권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연 2회 실시**

※ 전북교육청 장애인 인권교육 자료, 국립특수교육원 보급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실 컨텐츠, 인권문화마당-별별 이야기 등 활용

■ **특수학교(급)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장애학생이 자신의 권리 인식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전북교육청 장애인 인권교육 자료, 기 보급된 장애학생 및 가족을 위한 자기보호 역량 교육자료 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권장**

■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체계 구축**

- 동아리 운영 3팀(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연극, 통합동아리, 장애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다.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

-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기보호 역량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수시 성교육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성교육 시 활용

■ **특수교사의 성교육 및 장애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장애학생 성교육을 위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보건교사)의 협업체계 구축**

■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자료 활용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한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자신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 및 문제행동 대처의 어려움 해소 지원
- 특수교사, 일반교사, 부모 등에게 적절한 대처 및 행동 중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 제공

※ 2016 문제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결과(교육부, 2016),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별 중재 가이드북·매뉴얼(교육부·부산광역시교육청, 2014) 활용

■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부적절한 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중재 실시
- 사례별로 보건교사와 협력,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연계 지원 확대

□ 협조 및 유의사항

■ **지역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강화
  - 매월 30일까지 현장지원 결과를 도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고
  -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권 침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안 파악 시에 즉시 보고
  - 매월 1교 이상 현장지원 실시(방학 중에도 반드시 실시)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 및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계획 수립
-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체계 전달
  - 학교폭력·성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는 학교폭력 담당자,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
- 특수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한 문제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특수학교(급)**

-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보고
- 학교폭력·성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는 학교폭력 담당자, 피해학생 인권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 및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장애학생 성추행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홍보 철저
-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 특수교사의 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및 참여

4-4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병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 강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15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전북교육청1, 지역교육청14) 대상 연수 실시
- 연 4회 이상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조직 시 각 영역에 맞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절차 준수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ㆍ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의무·무상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지원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진단·평가 의뢰 활성화
-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안내 및 진단.평가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 홍보 강화

■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 병·의원, 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

- 특수교육대상 의심 학생에 대한 검사, 관찰, 면담을 통해 적격성 판정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진단·평가 계획 수립
  -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학교 및 유관기관에 안내
  - 추진 계획에 따라 진단·평가위원 구성 및 위원 위촉
  - 위촉 위원에 대한 사전연수, 검사 도구 및 서류 정비, 각종 자료 수집

- 진단·평가팀 구성
  - 진단·평가 팀장은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를 팀장으로 함
  - 진단·평가 팀원은 특수교사, 상담교사, 치료전문가, 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육 관련 대학교수 등 장애영역별 진단 평가 전문가로 구성함

- 사전 연수: 진단·평가팀 구성, 진단·평가의 시행 방법, 결과 처리, 유의사항 등에 대한 연수 실시

- 검사도구 및 관련 서류 정비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절차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	진단·평가 여부 판단	진단·평가 의뢰	진단·평가 실시	결과 통보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학부모 → 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센터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육 지원센터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진단·평가 의뢰(접수):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진단·평가 의뢰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의뢰

- 진단·평가 안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단·평가 의뢰를 접수한 후 대상자에게 진단·평가 일시 통보

- 진단·평가 실시: 의뢰받은 검사(진단·평가) 실시, 기초 면접 등 실시

- 평가결과 안내: 평가결과와 관련 교육적 조치(권고사항)를 학부모에게 안내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의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진단·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의뢰

- 진단·평가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지원(관련서비스, 순회교육 여부 등) 판단
  ※ 기타 세부 사항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업무 길라잡이 참고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 배치 절차 준수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유.초.중학생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 의뢰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또는 소위원회)에서 진단·평가 결과를 심사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법 제15조)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
-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결과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결과 통지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시 유의사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 특수학급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되더라도, 학적은 일반학급에 편성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재배치(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 학습부진아가 학습장애아동으로 선정·배치되지 않도록 지침 준수
  ※ 기타 세부 사항은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참고

라.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취학의무 대상 특수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의무교육 대상 중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취학 및 재취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 만 3~5세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5조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있는 것으로 간주

■ 과 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 원고(2015. 8. 19.)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반드시 특수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등 안내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취소

- 절차: 학부모 요구→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결정→학부모에게 통보→배치 철회(일반학생으로 간주)
- 선정 취소가 결정되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중단
- 희망에 따라 선정취소가 되었으나,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종 편의 제공 철저

□ 협조 및 유의사항

■ 지역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강화
  - 매월 30일까지 현장지원 결과를 도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고
  -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권 침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안 파악 시에 즉시 보고
  - 매월 1교 이상 현장지원 실시(방학 중에도 반드시 실시)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 및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계획 수립
-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체계 전달
  - 학교폭력·성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는 학교폭력 담당자,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
- 특수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한 문제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특수학교(급)

-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보고
- 학교폭력·성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는 학교폭력 담당자, 피해학생 인권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 및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장애학생 성추행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홍보 철저
-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 특수교사의 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및 참여

4-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 추진목적 및 근거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특수교육 기반 조성**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 추진내용

■ 지역 특수교육협력체제 구축

○ 방과후 마을학교를 통한 지역 학부모 마을교사 활성화

○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체계 구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협력 장애학생 취업서비스 강화
- 효사랑병원, 전북대병원 등과 연계한 진로직업 직무실습체험과 취업 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와 보호필요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서비스 활성화(전북대 병원학교)

○ 지역별 장애인권 및 이해 교육 학부모 강사단 인력풀 지원

■ 학부모 지원 강화

○ 학부모의 성장과 건강한 학교 참여를 통한 소통 지원

- 지역별 특수교육운영계획 설명회, 진로 및 진학설명회, 특수교육지원관련 교육 실시
- 학부모 성장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지원

○ 학부모의 주체적 학교 참여 보장

- 개별화교육지원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통한 참여
- 지역별 학부모회 및 동아리 활성화(14개 교육지원청별 운영 지원)
- 가족단위 교육지원 적극 권장: 방학 중 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합창단 등

5장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강화

5-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동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동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교육대상자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추진내용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취학유예자는 지원불가)

■ 치료지원 영역 및 내용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기타 관련서비스(음악, 미술, 심리운동, 감각통합)
- 의사의 처방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리·작업치료는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방법(아래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의 치료지원
-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관련 프로그램 활용

☞ **2018년도 10월부터 치료지원 전자카드 제도 도입 운영 → 특수교사와 업무담당자의 업무 경감**

■ 치료지원 제공 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통해 교육지원 의견 제시(치료지원 포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시한 교육지원 내용을 토대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의 내용과 방법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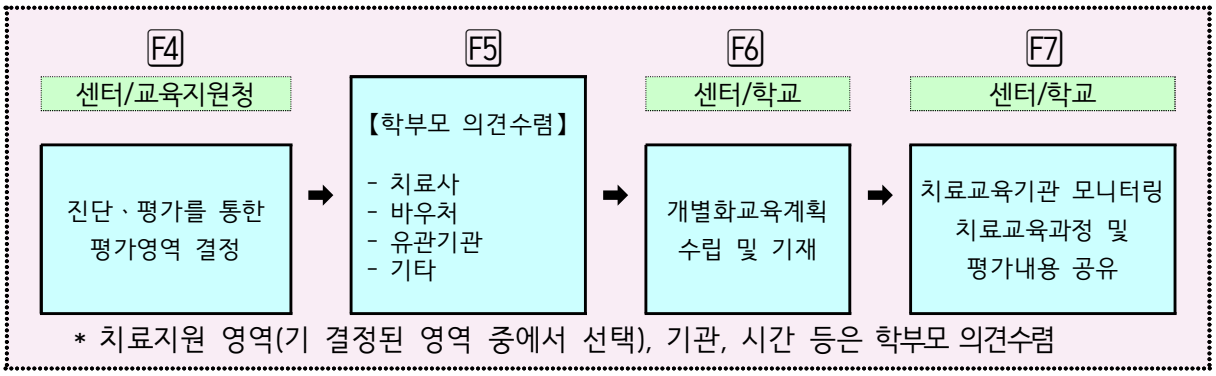

■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 국가면허 또는 주무부 장관 공인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

- 다음의 인력이 제공하는 치료지원 활용 가능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관련학과 졸업자(단, 해당영역)
  - 민간자격 소지자

■ 치료지원 전자카드「꿈 활짝 카드」사용 안내

① 카드 신청 및 발급(재발급 포함)

-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는 해당학교)

② 이용장소

-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드림스 APP또는 홈페이지에서 대상 가맹점 조회가능)

③ 이용방법

- 매월 1일 한도금액 생성

- 매월 말일 월 잔여한도 자동 소멸

□ 협조 및 유의사항

■ 치료지원대상학생 지원 지침 숙지

- 치료 중복 지원 및 과다 지원 방지 철저

- 치료지원 지침 숙지를 통한 민원 발생 억제 노력

■ 미인증사설치료기관에 치료지원비 지출 발생 방지를 위한 관련 서류 검토

■ 취학유예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불가

5-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추진내용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실제 원거리를 통학하거나, 중증장애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자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 제외대상: 취학유예자, 무료통학버스 이용자, 부모가 원하여 자가 통학하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관련 지원 대상자 등

□ 협조 및 유의사항

■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민원인에 대한 안내 강화

5-3 특수교육대상학생 유아무상교육

□ 추진목적 및 근거

◎ **공·사립 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실현**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

■ **운영 내용**

- 공립: 1인 월 90천원 이내 실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한 교육활동 경비)
- 사립: 1인 월 361천원 이내 실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한 교육활동 경비)

□ 협조 및 유의사항

■ 취학 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취학 유예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 누리과정 지원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람

■ 공·사립 유치원이 아닌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어린이집 등)

5-4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내용**

- 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를 조직하여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 특수학교: 교내 방과 후 과정 참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인 등록된 비영리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음
- 일반학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과 일반 방과후 과정 중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인 등록된 비영리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자 요구를 고려하여 치료지원 관련프로그램을 개설 확대 운영

■ **지원기준**

- 1개 프로그램 당(4명 이상 기준, 유치원은 3명 이상) 월 60만원 지원
  ※ 단,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치된 유치원은 지원 제외
- 참여 학생이 1~3명(유치원은 1~2명)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1인당 10만원 지원
- 유치원 특수학교(급) 중 방과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지원 학급은 학생당 운영비 5만원 지원

나. 유치원특수학교(급) 방과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지원

■ 지원대상: 유치원과정 특수학교(급)

■ 지원기준: 방과후과정 3명 이상 운영 학급

□ 협조 및 유의사항

■ 취학 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임

■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누리과정 방과후 지원비와 중복 지원 불가

■ 목적에 맞는 집행 및 복무관리 철저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만 지원** 되므로 선정·배치 상황을 정확히 확인 후 실시
- 치료지원, 통학지원, 장애 영·유아 무상교육비
- 방과후 학교

□ 집행잔액 반납 □

❍ 집행 잔액 반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모두 동일 ← 잔액 10만 원 이상)
- 반납시기: 2020. 2월중
- 반납절차
  · 공립: 에듀파인 교육비특별회계 징수→반납고지서 출력→납부(농협)
  · 사립 고·특수학교: 해당학교에서 본청 재무과에 납입 고지 요청
  → 반납고지서 수령 → 납부(농협)
  · 사립 중: 해당학교에서 교육지원청 경리부서에 납입 고지 요청
  → 반납고지서 수령 → 납부(농협)
  ※ 원단위 반납금지(국고금 관리법 47조에 근거)
- 에듀파인 시스템 반납 처리절차
  ① (학교회계) 2019회계연도 세입에서 과오납 반환결의
  ② (학교회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액 조정
  ③ (교특회계) 수입관리-수입현황-징수/반환현황-계획 작성-그 외 수입
  ④ (교특회계)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그 외 수입 징수결의(학교대상여부:아니오)
  ⑤ (교특회계) 반납고지서 출력 → 납부

5-5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개별화된 학습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추진내용

가. 용어 의미

■ 건강장애학생: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보호필요학생: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지만 질병,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유급)이 예상되는 학생

■ 병원학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 교사 1인이 운영하는 학급 형태이나 여러 학교급, 학년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병원학교로 통칭

■ 원격수업: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이나 보호필요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강의나 탑재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학습

나.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지원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 만성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학교 운영 및 지원

■ 개별화 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학교생활적응 도모

■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다. 원격수업 수강학생 지원

■ 만성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연간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의 건강장애학생과 보호필요학생에게 원격수업 수강 지원

■ 정신질환학생은 원격수업 수강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의 소속학교 담임교사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 관리 등에 관한 소속 학교 담임교사 및 업무담당자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는 생활기록부 관리 지침 준수(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작성 지침 내용 확인)

■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 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연수 강화

마. 건강장애 선정 및 재선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의료적·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선정

※ 건강장애 선정: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절차 진행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에는 선(先)교육 지원 가능

■ 정신질환으로 인한 학생이 건강장애로 선정되거나,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지원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정신질환학생은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불가**

□ 협조 및 유의사항

■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활용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시 전달

■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 자체 연수 실시하도록 지원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안내 등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관련 상담 시 친절히 응대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

■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보호자 등의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 확대

■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공문으로 반드시 등록 해지 조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수강학생 성적처리 및 출석인정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 또는 보호필요학생의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출결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 또는 보호필요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확인서에 따른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 성적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 또는 보호필요학생의 성적처리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 또는 보호필요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출석 인정

○ 병원학교 입교 또는 원격수업 수강을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병원학교나 원격수업에 참여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출석인정 절차

학교장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청(원격수업) 또는 병원학교에 공문으로 신청	→	도교육청과 병원학교에서는 학생 등록 조치	→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장은 학생의 수업출석에 대해 출석확인서를 학교와 도교육청에 송부	→	학교장은 출석확인서를 반영하여 출석 인정

○ 학교장은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도교육청 또는 병원학교에 공문으로 등록 해지 조치함.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지원 업무 계획 ■

1. 취지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의 건강장애학생에게 병원학교, 원격수업을 지원하여 학습권 보장

2.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3. 병원학교 운영 지원

• 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 신청
 - 소속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병원학교로 직접 신청
 - 병원학교에서 입급 확인서를 소속학교로 통보
• **병원학교 :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한누리병원학교**
 ※ 전국 병원학교 홈페이지 : http://hoschool.ice.go.kr

4. 원격수업 수강 지원

• 대상 : 초·중·고등학교 건강장애 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 운영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꿈사랑학교
• 학사관리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소속학교담임, 특수교사, 원격교육기관이 상호협력하여 건강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원격수업 수강 관련 절차
 - 수강 의뢰 : 소속 학교장 → 도교육청 → 운영 기관
 - 원격수업 수강
 - 원격수업 수강 명단 및 철회명단 통보
 ※ 운영 기관 → 도교육청 → 소속학교
 - 행정사항 통보 : 운영 기관 → 도교육청 → 소속학교

5-6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화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동법 제22조(개별화교육), 동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추진내용

가. 특수학교(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관리

■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도·중복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기준으로 운영

■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특수교육지도사에 준함

■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절차

학교	- 특수교육담당 교사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특수교육지도사 신청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지원 대상학생 및 학교 결정 통보
⇩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지도사 배치(전보)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 - 특수교육지도사 활용 및 관리 실태 점검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 부설학교는 국고에서 지원

나.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사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관리

■ 특수학교 기숙사에 배치된 학생들의 기숙사 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 생활지도사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

다.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관리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등ㆍ하교 등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배치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특수교육지도사의 정원 관리 철저

- 근무: 방학 중 비상시 근무 직종임
- 근무일수: 기존 연봉 체계의 일급단가 및 연봉기준일수(290일)는 폐지되고 월급체제로 전환(2014.1.1.)됨

■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강화(국가인권위 권고사항)

- 특수교육지도사 연수 2019년부터 4일에서 8일로 확대(2018.12월 임금협상에 의함)

■ 특수교육지도사의 방과후학교, 돌봄 지원이 고유 업무이므로 방학 중에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운영 시 참여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원 실시

■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해 행·재정업무 역할 부여 금지

■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근무평정 철저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바른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2019 부안특수교육 운영계획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JEOLLABUKDO BUAN OFFICE OF EDUCATION

Ⅲ 2019 부안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개요

1 목 적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조기발견, 교수·학습활동 지원, 순회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특수교육 질 향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제공

2 근 거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조직·운영

가. 운영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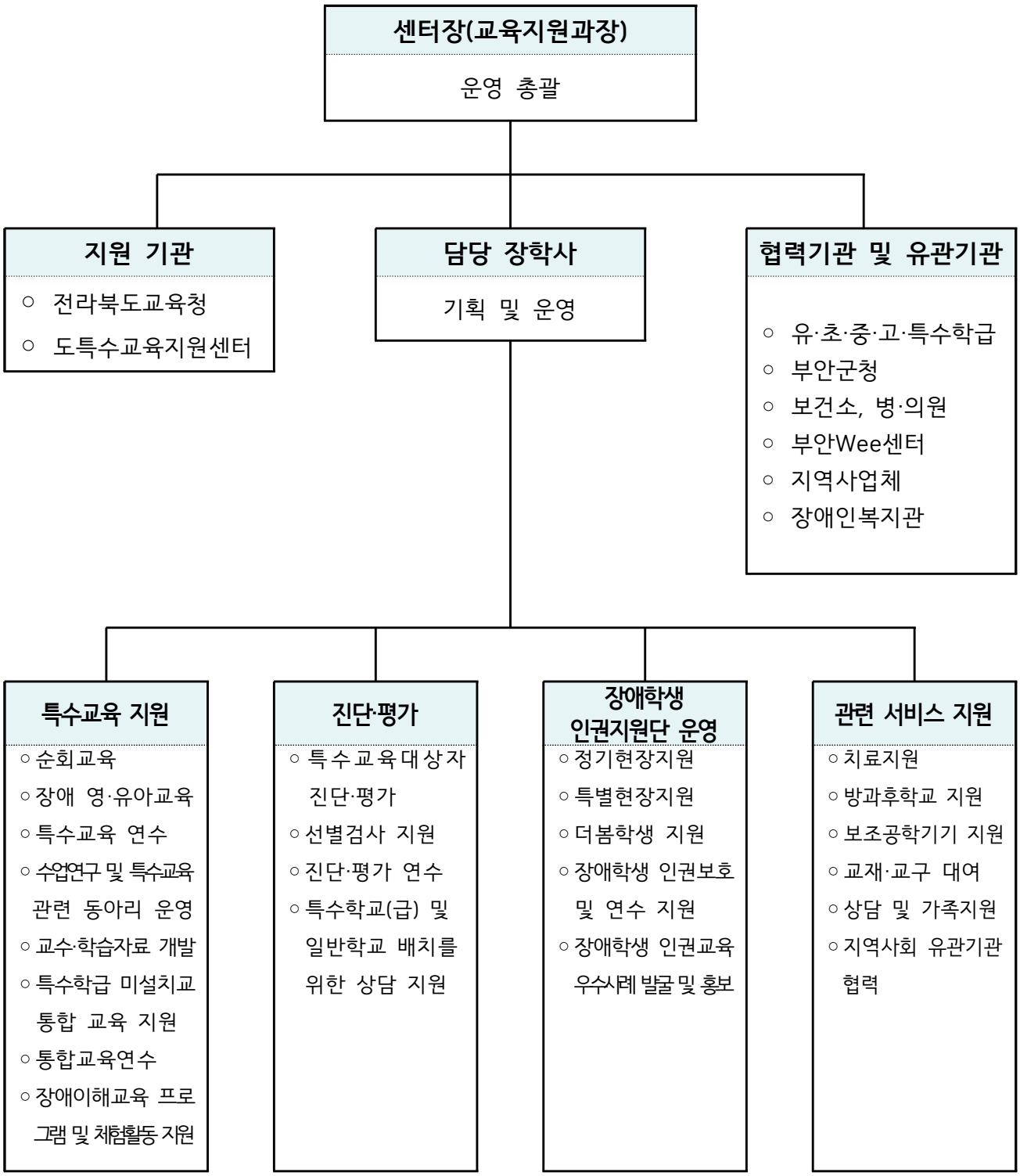

나. 전담인력 구성 및 역할

직 위	담당업무	비 고
센터장 (교육지원과장)	▪ 부안특수교육 통할 ▪ 부안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통할	
부센터장 (장학사)	▪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업무 총괄 ▪ 특수교육 주요업무 기획 및 운영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관련 업무 ▪ 특수교육서비스 관련 선발 및 배치 업무 ▪ 특수교육 장학 및 컨설팅 관련 업무 ▪ 특수교육 실태조사,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등 각종 통계 ▪ 센터 인력 관리	
특수교사 (초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전반 ▪ 유·초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통합교육 지원 ▪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업무 지원 ▪ 교수학습지원 및 연수(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 학부모) ▪ 방학 중 계절학교 프로그램 ▪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및 상담 ▪ 초등학교 진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특수교사 (중등)	▪ 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통합교육 지원 ▪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지원 ▪ 중·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수학습지원 및 연수(특수교육지도사 연수) ▪ 유·초·중·고 일상체험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치료지원) ▪ 순회치료 근무상황 업무 지원 ▪ 직업교육실 관리 및 정리	
특수교사 (유아)	▪ 유·초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통합교육 지원 ▪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지원 ▪ 장애 영·유아 교육 내실화 업무 ▪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식개선 및 이해 교육 관련 업무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통학비, 방과후)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업무 지원	
순회치료사	▪ 순회 치료지원 업무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관련 진단·평가 ▪ 치료지원 관련 상담	
특수행정실무사	▪ 특수교육관련 제반 업무 보조 및 지원 (문서 취합, 지출 업무 지원(계약 프로그램 지출)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 교재 교구, 진단·평가 도구 관리 및 대여 ▪ 센터 근무 환경 관리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체계 확립

■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영역을 지원하여 특수교육지원의 전문성, 다양화를 도모하는 특수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사회 변화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의 확대 및 특수교육력 제고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조

■ 특수교육지원센터 독립성 확보

- 특수교육지원센터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별도 운영 조직
-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센터 고유의 업무 수행

구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요 역할	- 특수교육 주요업무 계획 수립·추진 - 특수교육 컨설팅 관련 업무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선정·배치) - 특수교육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등 각종 통계 - 기타 특수교육 행정 지원 등 - 관련서비스 행정 업무(보조인력 관리 및 배치, 치료지원, 방과후, 통학비 지원 업무 등 행정적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 진단·평가 및 선별검사 지원 - 순회교육 -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원 -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운영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 관련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치료 프로그램 관리,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사항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성화 및 협력 운영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상호간의 업무 지원 및 사안 공동 대처를 통한 지원센터 안정화 도모
-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3개소: 전주, 군산, 익산)
  -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전주권역: 부안, 임실, 장수, 남원)
  - 권역별 운영지원 업무(직업관련 평가, 직업관련 연수, 센터 내 시설 이용 등)
- 감각장애 특성화센터 운영(4개소)

센 터 명	설치 장소	비고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청각장애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거점지원센터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북맹아학교	시각장애

Ⅳ 부안 특수교육 현황

1.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현황

(2019. 3월 기준)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학급	1	14	5	3	23
일반학급	1	0	2	1	4
총 계	2	14	7	4	27

2.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2019. 3월 기준)

구 분	학교명	특수학급 설치여부	일반학급 배치인원	특수학급 배치인원	총 배치인원
유치원 (2)	영전초 병설유치원	X	1	-	1
	부안해오름유치원	O	-	4	4
초등학교 (14)	곰소초등학교	O	-	2	2
	동북초등학교	O	-	1	1
	동진초등학교	O	-	5	5
	백련초등학교	O	1	3	4
	변산초등학교	O	-	2	2
	부안동초등학교	O	1	5	6
	부안남초등학교	O	-	3	3
	부안초등학교	O	-	5	5
	영전초등학교	O	-	2	2
	주산초등학교	O	-	2	2
	줄포초등학교	O	-	1	1
	창북초등학교	O	-	1	1
	하서초등학교	O	-	5	5
	행안초등학교	O	1	4	5
중학교 (7)	계화중학교	O	-	4	4
	백산중학교	X	1	-	1
	변산서중학교	O	-	1	1
	변산중학교	X	1	-	1
	부안여자중학교	O	-	5	5
	부안중학교	O	-	5	5
	줄포중학교	O	-	2	2
고등학교 (3)	부안제일고등학교	O	2	11	13
	서림고등학교	O	-	6	6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O	-	2	2

3.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2019. 3월 기준)

구 분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정서 행동	자폐	의사 소통	학습	건강	발달	계
유치원	0	0	0	0	0	0	0	0	0	5	5
초등학교	1	0	15	5	2	4	2	0	0	15	44
중학교	1	0	12	2	2	1	1	0	0	0	19
고등학교	0	0	14	1	3	1	1	1	0	0	21
계	2	0	41	8	7	6	4	1	0	20	89

4. 특수교사(특수학급) 현황

(2019. 2월 기준)

구 분	학교명	특수학급 수	특수교사 수
유치원	부안해오름유치원	1	1
초등학교	곰소초등학교, 동북초등학교, 동진초등학교, 백련초등학교, 변산초등학교, 부안동초등학교, 부안남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영전초등학교, 주산초등학교, 줄포초등학교, 창북초등학교, 하서초등학교, 행안초등학교	14	14
중학교	계화중학교, 부안중학교, 줄포중학교, 부안여자중학교, 변산서중학교	5	5
고등학교	부안제일고등학교, 서림고등학교,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4	5
교육지원청	부안특수교육지원센터	-	3
계		24	28

5. 특수교육지도사(보조인력) 현황

(2019. 2월 기준)

구 분	2019학년도 배치	학교수	인원수
유치원	부안해오름유치원	1	1
초등학교	동진초등학교, 백련초등학교, 부안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행안초등학교	5	6
중학교	계화중학교, 부안중학교, 부안여자중학교	3	3
고등학교	부안제일고등학교	1	2
계		10교	12명

V 부안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용

1 순회교육

목 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으로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 된 교육 제공을 통한 학습권 보장
추진내용	▪ **대상**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 ▪ **선정방법** 순회교육 계획수립 ▶ 순회교육 희망자 신청 ▶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순회교육 대상자 통보 ▶ 순회교육 실시 ※ 순회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장애 정도, 이동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가급적 학교에 출석토록 권장 ▪ **선정시기** (기간 / 내용 / 주체) 3월 1~3주 / 순회교육 신청 / 학부모, 해당학교 3월 3~4주 / 대상자 심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3월 4~5주 / 선정 결과 통보 및 순회교육 실시 / 순회교사 ▪ **지원방법** - 특수학급 미설치교 소속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우선 지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학생을 선정하여 순차적 지원 - 특수학급 소속 재택순회교육대상자는 각 학교 특수교사가 실시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사와 순회교사가 협의하여 순회교육 계획(수업내용, 수업일수, 시간표 등 포함)을 수립하여 협력 지원 - 주2회 이상 방문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교육, 체험학습, 과제학습 등 다양한 방법의 운영을 통하여 150일 이상 수업일수 확보 ▪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적 진단·평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지원, 특수교육 상담, 생활지도 등
비 고	▪ 순회교육 계획 구성요소, 순회교육 중단(순회교육 취소는 수시로 가능), 그 외의 세부사항은 「전라북도 순회교육 매뉴얼」 및 2019년 전북특수교육 운영계획 내 「순회교육 운영 지침」을 참고

2 진단·평가

<table>
<tr><td>목 적</td><td>■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로 의뢰된 학생의 정확한 진단평가 및 상담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배치,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결정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td></tr>
<tr><td>추진내용</td><td>■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 대상: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 중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의심되는 자
- 장애 영역에 따라 진단·평가를 실시(연 4회 진단평가 일정에 의거)하여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지원
■ 진단·평가 지원팀
<table>
<tr><th>순</th><th>소속</th><th>직위</th><th>영역</th></tr>
<tr><td>1</td><td>부안교육지원청</td><td>장학사</td><td>팀장</td></tr>
<tr><td>2</td><td>특수교육지원센터</td><td>특수교사</td><td>교육진단</td></tr>
<tr><td>3</td><td>특수교육지원센터</td><td>특수교사</td><td>교육진단</td></tr>
<tr><td>4</td><td>부안Wee센터</td><td>전문상담사</td><td>상담자문</td></tr>
</table>
■ 지원방법
- 의뢰 학생의 지능, 학습수준, 행동특성 등 학생의 교육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직업교육, 순회교육, 치료지원 및 관련서비스 지원 여부 등 기재
- 진단·평가 결과 누적관리
- 진단·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교 배치에 대한 상담 실시
■ 진단·평가 절차
<table>
<tr><td>선정·배치 신청서 제출</td><td></td><td>진단·평가 여부 판단</td><td></td><td>진단·평가 의뢰</td><td></td><td>교육지원청 실시</td><td></td><td>결과통보</td><td></td><td>특수교육 운영위원회</td></tr>
<tr><td>학부모, 학교 → 교육지원청</td><td>▶</td><td>교육지원청</td><td>▶</td><td>교육지원청 → 특수교육 지원센터</td><td>▶</td><td>특수교육 지원센터</td><td>▶</td><td>특수교육 지원센터 → 교육지원청</td><td>▶</td><td>교육지원청</td></tr>
</table>
- 진단·평가 의뢰(접수):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진단·평가 의뢰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의뢰
- 진단·평가 안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단·평가 의뢰를 접수한 후 대상자에게 진단·평가 일시 통보
- 진단·평가 실시: 의뢰받은 검사(진단·평가) 실시, 기초 면접 등 실시
- 평가 결과 안내: 평가 결과와 관련 교육적 조치(권고사항)을 학부모에게 안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진단·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td></tr>
<tr><td>비 고</td><td>■ 평가위원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연 4회 진단평가 (4월, 7월, 9월, 11월 예정)</td></tr>
</table>

3 통합교육

목 적	▪ 통합교육지원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통합교육 환경개선 ▪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해소 및 학교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추진내용	▪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부안 관내 특수학급 미설치교(영전초 병설유, 백산중, 변산중, 부안여고) - 통합교육 환경 개선 및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 **지원내용**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지원 - 통합학급 교사에게 특수교육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 자료 지원 - 문제행동 지도 및 생활지도 지원, 특수교육 관련 상담 지원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관련 전반적인 사항 ▪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지원** -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식 개선 관련 자료 소개, 장애체험 관련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 기기 대여 ▪ **통합교육 관련 연수 지원** - 관내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을 위한 현장중심 연수 실시
비 고	▪ 특수학급 미설치교 4교(영전초 병설유치원, 백산중, 변산중, 부안여고)

4 영·유아 지원

목 적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장애 심화 및 2차적 문제 발생 예방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가족지원을 통한 양육의 어려움 감소
추진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영·유아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홍보 및 상담** -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 안내, 센터 내 전화 상담 ▪ **특수교육대상자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정보관리**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정보관리(유관 기관 협조로 현황 파악)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진단평가 의뢰 및 특수교육지원안내 ▪ **특수교육대상자 영·유아 통합 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이 배치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통합교육지원 - 기관장 및 교사 연수 실시
비 고	▪ 특수교육대상이 배치되어 있는 유아 교육기관(부안해오름유치원, 영전초 병설유치원)

5 교수·학습 지원

목 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정도, 배치유형 등에 적합한 교육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확대
추진내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대상: 관내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및 인솔교사 - 일자: 3~12월 - 내용: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및 통합교육, 문화·예술 활동지원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연수 지원** - 대상: 관내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관리자 - 일자: 4월, 9월(연 2회) -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 역량 강화 및 문제행동 대처방안 연수 ▪ **특수교사 동아리·운영** - 대상: 관내 유·초·중·고 특수교사 - 일자: 3~12월 - 내용: 특수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아리 지원 - 방법: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관리** - 대상: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 - 일자: 연중 - 내용: 특수교육지원의 효율성 향상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및 누적관리 ▪ **특수교육 활동자료 공유 및 보급** - 대상: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 - 일자: 연중 - 내용: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문서배부를 통해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교육자료 공유 및 보급 활성화 ▪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 대상: 관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 일자: 8월 - 내용: 특수교육지원센터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운영
비 고	▪ 일정 및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6 진로·직업교육 지원

<table>
<tr><td>목 적</td><td>■ 특수교육대상자의 자립생활 및 직업 능력 배양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td></tr>
<tr><td>추진내용</td><td>
■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프로그램 영역 선정
- 센터 내부 또는 외부 위탁형태의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단위 학교간의 정보 공유 및 프로그램 협의를 통해 전체 운영에 관련한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table>
<tr><th>시기</th><th>내용</th></tr>
<tr><td>3~4월</td><td>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진로·직업교육 수요 조사 실시</td></tr>
<tr><td>4~11월</td><td>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td></tr>
<tr><td>10월</td><td>장애인 고용 사업장 및 선진지 견학</td></tr>
</table>
■ 초등학교 진로·직업 인식 프로그램
- 직업흥미검사를 통한 직업흥미 고취 및 직업인식 교육 실시
-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체험 중심의 교육실시
■ 중학교 진로·직업 탐색 프로그램
- 직업검사 도구를 활용한 직업교육 계획수립 지원
- 관내 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직업탐색 교육실시
- 지역사회 연계 교육 실시
■ 고등학교 맞춤형 진로·직업 프로그램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직업적 기초 능력 함양
-실질적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자격증 취득
-직업교육을 통하여 졸업 이후 취업 가능성 증진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 프로그램
-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희망 학급 수요조사 후 프로그램 참여
■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연수
- 대상: 관내 특수교사 및 학부모
- 일자: 6월, 11월 중
</td></tr>
<tr><td>비 고</td><td>■ 일정 및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td></tr>
</table>

7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목 적	▪ 학교 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지원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 폭력·성폭력 예방,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
추진내용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 대상: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 내용: 필수인원으로 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2월 중) ※ 필수인원: 센터장,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 특수학급 교장(감),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기 현장지원** - 대상: 관내 장애학생 재학 학교 - 일자: 3~12월(월1회) - 내용: 학교 현장을 인권지원단 위원 3인 이상이 직접 방문하여 지원 ※ 방학기간에도 반드시 매월 1회 이상 실시(전화 점검 등 대체불가) ▪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 대상: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장애·비장애 학생 - 일자: 4월~10월 중 학교별 신청 일자 - 내용: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공연 및 강사진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정보 관리** - 대상: 더봄학생 - 일자: 연초 - 내용: 더봄학생 조사·관리 및 우선 지원 ※ 더봄학생: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 **인권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기 협의회·간담회 운영** - 대상: 인권지원단 위원, 교장(감), 교사 및 학부모 - 일자: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내용: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비 고	▪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장애학생 피해 최소화 ※ 상황 발생 시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관내 관할기관 및 Wee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학생 피해 최소화와 인권보호 조치에 만전 기할 것

8 관련서비스 지원

목 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으로 교육복지 증진 ▪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추진내용	▪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의 부모(보호자) 및 형제·자매 - 내용: 부모상담 및 보호자 교육, 가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대상: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교 - 내용: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 **치료지원**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취학유예자는 지원불가) - 내용: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 위 방법 중 한가지 선택. 단, 군 재활 바우처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 ▪ **방과후학교 지원** - 내용: 방과후 프로그램당 월 60만원 또는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통학비 지원** - 대상: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실제 원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버스비 실비 지급, 자가용은 1㎞당 200원씩 지급 ▪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대상: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 내용: 공립 월 9만원, 사립 월 361천원 이내 실비 지원 ▪ **특수교육지도사(보조인력) 운영 지원**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 - 내용: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교육 및 학교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 담당
비 고	▪ 취학유예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지침 숙지를 통한 민원 발생 억제 노력

Ⅵ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점 사업

1 2019 가족캠프

목 적	▪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간의 유대감 향상 및 학생의 정서적 안정감 도모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및 형제·자매에게 특수교육 관련 정보제공 ▪ 가족과의 체험활동으로 가족 구성원의 소통과 화합의 기회 마련
세부추진 계획	▪ 기간: 2019. 5. 9.(목) ~ 2019. 5. 10.(금) ▪ 대상: 관내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 40명(4인 기준 10가족) ▪ 장소: 추후 결정(2018년 여수, 2017년 부산 및 경남 일대) ▪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교육복지 증진 - 가족캠프를 통해 가족 간 유대감 향상 및 가족의 소중함 확인
비 고	▪ 가족캠프 참여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신청 인원 초과 시 2018학년도 선정 학생은 후순위로 함

2 초등학생 진로·직업 인식 프로그램

목 적	▪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건강한 직업의식형성 ▪ 직업 탐색 및 경험을 통한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관계인식 및 진로의식 함양
세부추진 계획	▪ 기간: 2019. 6월 ~ 2019. 7월 ▪ 대상: 관내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소: 부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내용 -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 특기 등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 제공 - 유의미한 체험활동으로 삶과 연결된 직업의 세계 탐색
비 고	▪ 유관 기관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 및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

3 중학생 진로·직업 탐색 프로그램

목 적	▪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을 통한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 진로·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형성 및 자신의 진로 설계 ▪ 잠정적인 진로에 관한 정보, 직업 생활 탐색
세부추진 계획	▪ 기간: 2019. 5월 ~ 2019. 11월 ▪ 대상: 관내 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소: 부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지역사회체험처 ▪ 내용 - 학생들의 진로·직업 탐색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탐색 프로그램(예: 요리, 목공)
비 고	▪ 운영 프로그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학교의 학사일정 통한 일정 조정)

4 고등학생 맞춤형 진로·직업 프로그램

목 적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기회 부여 ▪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신감 고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립 생활 및 직업 생활 준비를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세부추진 계획	▪ 기간: 2019. 4월 ~ 2019. 11월 ▪ 대상: 관내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 장소: 부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지역사회체험처 ▪ 내용 - 현직에 종사하는 직업인의 초청 강연으로 직업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 직업의 특성 파악 및 필요 직무 능력에 대한 이해 - 자립생활 및 직업 생활 준비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직업교육(예: 바리스타, 컴퓨터 등)
비 고	▪ 운영 프로그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학교의 학사일정 통한 일정 조정)

5 연합 일상생활 프로그램

목 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상생활 능력 및 사회적응 능력의 신장 ▪ 독립적인 여가 생활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여가 생활의 다양성 경험
세부추진 계획	▪ 기간: 2019. 5월 ~ 2019. 11월 ▪ 대상: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유·초·중·고) 및 특수교육담당자 40명 ▪ 내용 - 일상생활 연계를 통한 기초 자립 생활 향상 -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유대감 형성, 사회적응력 향상 및 독립생활 기술 함양

월	장소	교육내용
5	도서관 이용	회원증발급, 도서 및 인터넷, DVD 활용
6	음식점(패스트푸드점포함)	주문 및 계산, 식사습관, 청소
7	관공서 이용	인증서 발급, 등·초본 발급
9	마트 및 시장 이용	구매 및 계산
10	영화관 이용	영화관 이용, 관람예절
11	직업진로체험관 이용	체험관 이용 예절

비 고	▪ 학교의 학사일정을 통한 일정 조정 및 각 학교 선호에 따른 추후 장소 변경 가능 ▪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위주의 기관에서 실시

6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체육활동

목 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 제공 및 문화 향유권 확대 ▪ 장애 특성에 적합한 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실현
세부추진 계획	▪ 기간: 2019. 학기 중 ▪ 대상: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유·초·중·고) ▪ 장소: 미정 ▪ 내용 - 초, 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 악기교육 실시 - 지역사회 유관기관, 스포츠 시설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활동 지원 등
비 고	▪ 일정, 장소, 프로그램, 예산 미정(재배정)

7 특수교육지도사 연수

목 적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발전적인 실천방안 모색 ▪ 특수교육 관련 지식 연수를 통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자질과 소양 함양
세부추진 계획	▪ 기간: 2019. 8월 중(3일간 총 15시간 운영) ▪ 대상: 관내 특수교육지도사 ▪ 장소: 부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내용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법 및 직무능력 향상 연수 - 교육현장 관계자 역할 이해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관련 연수
비 고	▪ 추가 연수가 필요할 경우, 국립특수교육원부설 원격연수원의 사이버 연수 안내

8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목 적	▪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올바른 장애인관 확립 ▪ 장애학생 및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 ▪ 타인 이해와 배려 및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비장애 학생의 긍정적 인성 함양
세부추진 계획	▪ 기간: 2019. 4월 ~ 2019. 10월 ▪ 대상: 관내 교사, 학생, 학부모, 부안교육지원청 전직원 ▪ 장소: 신청학교 및 부안교육지원청 ▪ 내용 - 학생: 유·초·중·고 통합학급 학생들의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수업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의 장애이해 관련 내용 활용 장애인의 날, 장애체험활동, 외부강사 초빙, 시설 방문, 봉사활동 등 - 교사 및 학부모: 특수교육 이해 및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 - 부안교육지원청 직원: 외부강사를 활용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비 고	▪ 다양한 행사활동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이해 교육 실시 ▪ 장애인복지법 관련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교육부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Ⅶ 2019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1 교육부 및 국립특수교육원 행사

1) 2019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 일 시: 2019. 5. 14. ~ 17. (예정)

■ 장 소: 전라북도 익산시

■ 주 최: 대한장애인체육회

■ 주 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경기종목: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 실내조정 등

■ 참석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특수교육 교원 등

2)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일 시: 2019. 9. 3. ~ 4. (예정)

■ 장 소: 서울 The-K 호텔

■ 주 최: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게임즈(주)

■ 후 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내용: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경진대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등

■ 참석대상: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교원,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약 1,500명

3) 진로드림 페스티벌

■ 일　　시: 2019. 10. 1. ~ 2. (예정)

■ 장　　소: 서울 The-K 호텔(예정)

■ 주　　최: 교육부

■ 주　　관: 서울교육청

■ 대상영역: 발달장애

■ 참가대상: 전국 발달장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2 전라북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1) 2019 전북특수교육계획 설명회

■ 일　시: 2019. 1. 21.(월)

■ 장　소: 전라북도교육청 8층 회의실

■ 대　상: 지역교육지원청 특수담당전문직,특수학교 교감·교무부장·연구부장, 특수교육지원센터팀장 교사

■ 내　용: 2019 전북특수교육운영계획

2) 2019 호남권역(광주, 전남, 제주, 전북)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워크숍 개최

■ 일　시: 2019. 2. 14.(목) ~ 2. 15.(금)

■ 장　소: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

■ 대　상: 교육부, 시·도교육청 담당장학관(사), 담당교사 등

■ 내　용: 호남권역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3) 2019 특수교육지도사 및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직무연수

■ 일　시: 2019. 2. 18.(월) ~ 2. 22.(금)

■ 장　소: 전주대학교 예술관

■ 대　상: 특수교육지도사 및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 내　용: 직무연수

4) 2019 특수교육이해를 위한 관리자 연수

■ 일　시: 2019. 4. 4.(목), 4. 11.(목)

■ 장　소: 전북도청 공연장

■ 대　상: 유·초·중·고등학교

■ 내　용: 장애학생 인권교육, 통합교육 등

5) 2019 장애학생 해외현장체험학습

■ 일　시: 2019. 5월(예정) / 10월(예정)

■ 장　소: 싱가포르

■ 대　상: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교사

■ 내　용: 학부모와 함께하는 장애학생 해외 현장 체험

6) 통합학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 일　시: 2019. 4. 19.(금), 8. 30.(금)(예정)

■ 대　상: 통합학급 담당교사

■ 내　상: 장애학생 이해와 통합학급 운영

7)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 일　시: 2019. 4. 13.(금), 5. 11.(금), 6. 15.(금)(예정)

■ 장　소: 전라북도교육청 7층 회의실(예정)

■ 대　상: 특수담당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 내　용: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8) 전라북도 장애학생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 일　시: 2019. 10. 18.(목)(예정)

■ 장　소: 전라북도교육청 7층 회의실(예정)

■ 대　상: 장애학생 인권교육 우수사례 원고 제출 등

■ 내　용: 장애학생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표

9) 2019 호남권역(광주, 전남, 제주, 전북)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개최

■ 일　시: 2019. 11. 29.(금)

■ 장　소: 장소 미정

■ 대　상: 교육부, 시·도교육청 담당장학관(사), 담당교사 등

■ 내　용: 호남권역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성과보고회

10) 전라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순	개최 일자	심의 내용	비 고
1	2019. 2. 15	유예, 면제, 선정취소, 재취학 등	
2	2019. 4. 19	선정.배치, 재배치, 선정취소 등	
3	2019. 7. 12	선정.배치, 유예, 면제, 선정취소, 재취학 등	
4	2019. 9. 19 ~ 20	고등학교 입학(배치), 선정.배치 등	고등학교 입학은 별도 안내
5	2019. 10. 18	고등학교 입학 추가(배치), 재배치 등	
6	2019. 11. 15	고등학교 입학 추가(배치), 재배치 등	
7	2020. 2. 14	유예, 면제, 선정취소, 재취학 등	

※ 개최일 7일 전까지 도교육청 교육혁신과로 공문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규 선정 신청은 개최일 3주일 전까지 도교육청 교육혁신과로 공문 제출

3 기타 행정사항

1) 2019 특수교육 운영계획서 수립

■ 대 상: 교육지원청

■ 내 용: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 계획 수립 및 연수 실시

■ 시 기: 2019. 2월 중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질병예방 관리 철저

■ 대 상: 시·도 특수교육대상학생

■ 내 용: 장애영역과 정도에 따른 예방 관리 계획 수립 추진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발생 시 보고 철저

3) '2019년 특수교육통계' 조사 실시

■ 대 상: 시·도교육청 및 국립학교

■ 내 용: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 기관 및 교원 현황 등 특수교육 관련 주요 현황

■ 방 법: 조사 자료에 대한 검수 철저 및 기한 준수

■ 제출처 / 제출일: 국립특수교육원 / 미정

4) '2019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 대　상: 시.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학교, 대학 등
- 내　용: 특수교육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서 국회 제출
- 방　법: 조사 자료 확인 및 점검 철저
- 제출처 / 제출일: 국립특수교육원 / 미정

■ **발 행**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교 육 장 정 찬 호

■ **총 괄**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교 육 지 원 과 장 임 석 주

■ **기 획**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조 영 재

■ **집 필**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교 사 김 소 연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교 사 문 다 희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교 사 송 건 호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특 수 행 정 실 무 사 박 승 준

바른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2019. 부안특수교육 운영계획

인 쇄 일	2019년 2월 28일
발 행 일	2019년 2월 28일
발 행 처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jbbae.go.kr/
주 소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13
전 화	(063) 580-7419
F A X	(063) 584-7443